

## 경찰대학원 설립방안 연구

### 《研究陣》

---

연구위원 : 박 인 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연구실장 : 김 영 조 (총 경)

연구관 : 윤 성 철 (경 감)

---



# 목 차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3. 활용방안 및 제한점 .....	7
제2장 경찰대학원 설립의 필요성 .....	9
1. 학습패러다임의 변화와 고학력 사회 .....	10
2. 대학원 대학교의 설립 동향 .....	12
3. 범죄의 고도화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의 증가 .....	15
4. 현장과 유리된 일반대학원 교육 .....	17
5. 위탁 및 파견교육에 의한 인재양성 미흡 .....	20
6. 경찰대학의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의 한계 .....	25
7. 교육훈련기관의 문제 .....	27
제3장 경찰대학원 설립 요건과 현재 여건 .....	31
1. 대학원 설립·운영 관련 법령 및 규칙 .....	31
2.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종류별 주요 사항 비교 .....	44
3.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설립 요건과 현재의 여건 .....	46
제4장 경찰대학원 설립 관련 법령 개정 .....	52
1.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원 법령 검토 .....	53

2. 『경찰대학설치법』의 개정 방향 .....	58
<b>제5장 경찰대학원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안) .....</b>	<b>61</b>
1. 학생선발 .....	61
2. 교육과정 .....	67
<b>제6장 경찰대학원 예산 운영 방향 .....</b>	<b>70</b>
1. 수 입 .....	70
2. 지 출 .....	71
3. 수입과 지출 총계 .....	73
<b>제7장 경찰대학원 설립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조사 .....</b>	<b>74</b>
1. 표집대상 .....	74
2. 설문구성 내용 .....	76
3. 문항별 분석 내용 .....	76
3. 설문 결과 요약 .....	84
<b>제8장 결론 및 제언 .....</b>	<b>86</b>
<b>참고문헌 .....</b>	<b>88</b>
< 부 록 1 > 경찰대학원(가칭)설립에 관한 의견조사서 .....	89
< 부 록 2 > 경찰대학원 설립에 대한 계급별 반응분석결과 .....	95
< 부 록 3 > 경찰대학원 설립에 대한 학력별 반응분석결과 .....	118
< 부 록 4 > 관계법령 .....	134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정보매체의 발달과 함께 도래한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은 어느 시기보다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그 사회의 경쟁력이 지식의 소유여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식과 관련된 활동이 사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필요한 지식을 즉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사회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도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또한 변하고 있다. 우선, 전통적으로 지식의 전달과 기억이 중심이 되었던 교육에서 필요에 따라 적합한 지식을 찾아내는 능력 육성이 중요하게 되었다. 더불어, 학생도 산업사회에서 중심이 되었던 자본과는 달리 지식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하게 되었다. 이제 학습은 정규교육기간인 대학교육으로 종료되지 않고,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학습과 더불어 대학원 수준에서의 학습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특정 기관의 구성원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학수준의 교육보다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대학원’은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사실, 경찰대학원 설립은 이미 1992년 『경찰대학 발전방안』에 제시되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다양한 맥락에서 언급되었다. 예컨대, 국회에서는 1999년 추미애, 홍문종 등의 국회의원이 경찰직의 전문화를 위해 경찰대학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2000년에는 경찰교육개혁 추진 중 장기과제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2년 대선에서 경찰관련 정책 질문 중에 경찰대학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2003년부터 경찰대학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찰대학 자체를 폐지

하자는 주장이 부상하면서 이 계획 자체가 연기되었다. 상황적인 변동 속에서 경찰대학원은 경찰대학을 폐지할 경우에 경찰간부의 자질 향상을 위한 대안적 교육기관으로서 언급되기도 하였다.

경찰 조직 내에 경찰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대학 혁신 자문위원회의 회의 자료에 언급되어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경찰대학원은 “치안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찰학·범죄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경찰대학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이 자료에서는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었다.

- 이론위주의 일반대학 교육을 통한 자발적 교육의 한계 직면
- 경찰조직내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고급학위 교육기관 전무
- 경찰학의 발전을 위한 경찰·학계·연구기관간 연계체제 부재
- 민간대학·외국대학의 위탁교육으로는 전문인력 양성 미흡
- 경찰학 분야 교수진 양성곤란으로 연구성과 및 교육효과 미흡

이상의 문제점 중에서 현재 교육 영역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구성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볼 때 가장 심각한 것으로는 현장의 맥락이 반영되는 교육과정의 구성이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석사 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만으로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경찰대학원을 새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행정대학원이 설치된 곳에는 대부분 경찰행정전공 또는 학과가 대학원 수준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한다면, 새로 경찰 조직 내에 경찰대학원을 설립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만약 일반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석사과정에 진학하는 것보다 경찰 조직 내에 자체적으로 대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저렴하다면 이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외부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구성원들이 등록금, 수학에 따른 부대비용이 경찰청에서 실시하

는 교육·훈련 과정의 비용보다 상회한다면 자체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탁교육에 의한 대학원 교육을 통해 경찰 조직에서 원하는 역량을 갖춘 고급 인력이 양성되지 않고 있다면, 비용의 문제와는 별도로 경찰대학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필요성은 국내 경찰관련 대학원 교육과정이 천편일률적으로 행정학 중심,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대학원 설립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 이전에 현장의 요구와 문제점에 연계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자체적인 대학원이라는 시각에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경찰대학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경찰대학 혁신 자문위원회의’ 자료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 자료에 언급된 필요성으로는 1) 급속한 치안환경변화에 대비한 전문인력 소요 증가, 2) 교육예산의 제한으로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책 강구 필요, 3) 경찰관 고학력화 추세 부응위한 간부자질 향상책 수립 필요, 4) 경찰조직내 치안전문가 양성 및 경찰학의 기술축적 필요, 5) 경찰대학의 시설·설비·교수요원 등 활용대상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현재 갖추고 있는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이며, 향후 필요한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추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대학원을 설립한다면, 어떤 법령,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현재의 시설과 인적 자원이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경찰대학원의 구체적인 모습에 해당되는 교육과정과 운영경비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경찰대학 혁신 자문위원회의’에서는 경찰대학원 설립에 관한 기초 조사에서 해외의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 인민공안대학교, 대만중앙경찰대학교 등에서는 대학원 수준의 경찰 전문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경찰대학원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성,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리적 및 실증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 경찰대학원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지하는 실증적 근거는 무엇인가?
2. 대학원 설립관련법에서의 설립 요건은 무엇인가?
3. 현 경찰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은 관련법에 명시된 대학원 설립요건을 충족시키는가?
4. 경찰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계법령 중에서 개정해야 할 것과 새로 제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5. 경찰대학원을 설립할 경우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6. 경찰대학원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가. 연구내용

#### (1) 경찰의 인적 구성 및 양성체제 실태 분석

경찰대학원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경찰청이 전문 인력을 왜 필요로 하는지는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대학교와는 달리 대학원 졸업자는 특정 영역의 전문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점이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지도 확인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특정 영역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만 경찰 조직에 전문가도 없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인력 양성 체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대학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신입경찰관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학 졸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의 경찰관 중에서도 다수가 일반 대학에 설치된 경찰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과정을 개인적으로 밟고 있기도 하며, 또 진학하고자 희망하는 경찰관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경찰관의 학력 분포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대학원 과정

에 재학 중인 경찰관 수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찰대학원을 설립할 필요가 내부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또 매학기 적정 선발 인원 등을 확인하였다.

## (2) 대학원설립 관련 법령 분석

경찰 조직에서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은 개략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대학에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경찰대학이 일반대학의 설립과 관련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이 아닌 「경찰대학 설치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경찰대학과는 별도로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학부교육과정이 없는 대학원 대학의 설립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국가단체가 정부예산으로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적 및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경찰대학에 경찰대학원을 설치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차원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기준이 무엇이며, 현재의 여건이 충분한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경찰대학 관련 법령 분석

「경찰대학설치법」에는 기본적으로 학부수준인 경찰대학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찰대학에 대학원을 함께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의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대학교의 관계법령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경찰대학설치법」 중에서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분석하였다.

## (4) 경찰대학원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방안

경찰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개정과 더불어 예산을 승인받는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찰대학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즉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경찰대학원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 모색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첫째, 경찰 관련 국내외 대학원 과정 현황을 조사하였다. 경찰 관련 대학원 과정은 기존의 대학에 이미 다수 설치되어 있다. 국내에도 계명대학교처럼 학과 단위로 개설된 대학도 있고, 고려대학교처럼 학과 내의 세부전공으로 개설된 곳도 있다. 이점에서 보면 경찰을 위한 대학원 교육 기회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도 경찰대학에 경찰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 기회들이 고급 경찰 인력을 양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경찰 관련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경찰대학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경찰에서의 경찰대학원 설립 관련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찰대학원 설립은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점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요구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대학원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성,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 (5) 경찰대학원 운영 소요 추정 예산

앞에서 언급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경찰대학원 운영 예산을 추정하는 것도 역시 다소 성급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경찰대학원 설립의 타당성 차원에서 개략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에서 대학원 대학교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 경찰대학에 대학원 과정을 추가로 운영할 경우에 최소한의 경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 나.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대학원 설립 및 교육과정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를 중심으로 대학원 설립 관련 자료 조사
- 경찰의 인력양성 관련 연구 논문 조사
- 경찰 자체의 보고서 조사
- 국내 경찰 관련 대학원 교육과정 조사

## (2)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경찰대학원 설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부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설문대상자는 경찰청 산하 3개 학교에 9월 중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및 연수생, 일반 대학교의 경찰학 관련 전공에 수학하고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설문 참여자는 총 867명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는 VII 장에서 제시되었다.

## 3. 활용방안 및 제한점

### 가. 활용방안

경찰대학원 설립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가 있다. 첫째, 현재 경찰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기초연구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언급한 경찰대학원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은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찰대학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령 개정의 참고자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자료는 실제 경찰대학원을 설립하였을 때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활용방안과 더불어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전문적 연구·교육을 통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예 경찰리더 육성이 필요하며, 경찰대학이 경찰학·범죄학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대학원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조직의 목적에 부합되는 고급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일반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파견 또는 위탁하는 경우 현장의 요구나 문제점에 부합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 가치가 있을 뿐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즉, 학위가 단지 명목적인 가치를 가질 뿐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학위의 진정한 가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나. 제한점

본 연구는 경찰에서의 경찰대학원 설립에 관한 연구이며, 특히 문헌연구, 법령분석 등과 같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증적인 자료의 수집은 기존에 경찰에서 발표한 자료 또는 기타 통계 관련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실증적 자료는 경찰대학원 설립에 대한 구성원 및 일반대학교 경찰관련 전공자들의 인식과 관련된 설문결과이다. 따라서, 실제 경찰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때에는 이외에 실증적 자료가 더 추가로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경찰과 관련된 조직(예컨대 행자부) 구성원의 인식, 정치인들의 인식, 일반 시민 들의 인식 등에 관한 자료도 추가로 수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으로 경찰대학원 설립이 이루어지면, 어떤 전공을 개설하고, 또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상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의 경우 연구자의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특히 대학원 교육과정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 영역의 전공자가 결코 언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진을 새롭게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제2장 경찰대학원 설립의 필요성

경찰대학원의 설립은 경찰대학의 설립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과제이다. 이점에서 경찰대학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언급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미, 학부수준의 대학이 설립된 시점에서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 및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SWOT 기법으로 경찰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진술하였고, 더불어 경찰 구성원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추가하여 VII장에 제시하였다.

참고로 SWOT는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의 합성어이며 SWOT 분석은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 기법으로 주로 기업에서 전략을 수립할 때 활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자신이 속한 조직을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내부환경분석, 자신을 제외한 모든 기회와 위협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외부환경분석이라고 한다. 다음의 표는 이 SWOT를 바탕으로 경찰대학원 설립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다.

<표 1> 경찰대학원 설립 관련 SWOT 분석

내부환경분석	외부환경분석
<p>Strength(강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대학의 시설 및 인력</li> <li>- 경찰인력의 확대</li> <li>- 대졸 이상의 채용 비율 증가</li> </ul>	<p>Opportunities(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대학원의 현장과 유리된 교육</li> <li>- 대학원 대학교의 설립 증가</li> <li>- 전문인력의 필요성 증가</li> </ul>
<p>Weakness(약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적인 인력개발 체제 미약</li> <li>- 위탁, 파견 교육의 미약</li> <li>- 경찰대학의 특별법에 의한 설립</li> <li>- 지휘관급 이상에서 전문가 미약</li> </ul>	<p>Threats(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학력 사회로의 전환</li> <li>- 기존 경찰 관련 대학원</li> <li>- 경찰대학 폐지론</li> <li>- 범죄의 고도화</li> </ul>

위의 표에 제시된 항목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찰대학원 설립 필요성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학습패러다임의 변화와 고학력 사회

고학력 사회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징으로 자주 언급된다. 지식이 새로 창출되고 빠르게 변하는 지식 중심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정보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도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학력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구성원들의 학력이 점차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

<표 2> 성별/교육정도별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학 력	2000	1995	1990	1985	1980
초졸이하	23.0	26.6	33.4	43.4	55.3
중 졸	13.3	15.7	19.0	20.5	18.1
고 졸	39.4	38.0	33.5	25.9	18.9
대졸이상	24.3	19.7	14.1	10.2	7.7

예컨대, 정보화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한 1990년에 우리나라 25세 이상의 인구 중 14.1%를 차지하던 대졸자가, 2000년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24.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4명 중 한명이 이미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학력의 증가는 상급학교 진학률의 추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등학교 졸업생 수의 74.2%가 대학을 진학하고 있으며, 재

수생을 포함할 경우 거의 모든 학생(94.9%)들이 진학하고 있다. 대학원 진학자도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42%(재수생 포함)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지난 5년간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률(통계청, 2003)

학교급	연 도	졸업자수	당해졸업자	전체(재수포함)
			진학자수	진학자수
고등학교	2003	590,413	470,701	601,600
	2002	670,713	497,483	636,809
	2001	736,171	518,638	654,677
대학교	2003	258,126	31,186	104,448
	2002	244,852	29,526	102,784
	2001	239,702	27,193	99,562

우리 사회의 학력 증가는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한편, 필요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학력을 낮춰 직업을 선택하는 기현상을 낳기도 하고 있다. 예컨대, 대학·전문대 졸업자들은 과거 실업계 고졸자들이 취업하던 생산·사무직뿐 아니라 공무원, 순경,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에도 몰려 고졸 인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과거 고졸자들이 주로 지원하던 9급 시험에도 대졸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러한 직종에도 이미 절반이상의 지원자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고학력 소지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차지함에 따라 대학원 이상의 구직자 중 31% 이상이 학력을 속이고 취업원서를 작성하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고학력의 추세는 경찰 조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최응렬, 2002). 예컨대, 일반 순경의 경우 90년대 초까지도 지원자의 50% 이상을 고졸자들이 차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90년대 말에 이르러 전문대 및 일반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로 완전히 바뀌었다. 특히, 일반 순경 합격자의 경우 과거에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60%를 미치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90%를 상회하고 있다. 예컨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일반 순경 합격자 중 전문대 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은 평균 90%에 육박한다. 물론, 1999년의 경우는 1997년 환란의 위기 후에 취업이 어려워진 사회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 추세는 2003년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학력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공채순경 학력분포(단위 : %)

연 도	학 력	대 졸		합 계
		4 년 제	2 년 제	
1999		57.0	29.0	86.0
2000		53.2	37.2	90.4
2001		55.4	36.1	91.5
2002		66.2	21.0	87.2

2003년도에는 남자순경 1,652명의 83.4%, 여자순경 305명의 95.1%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전 3년 동안 순경시험 합격자 중 대졸자 비율이 90% 이상이라는 점이 밝혀짐으로써 순경은 물론 간부후보 임직자의 다수까지 고졸 이하이던 경찰대학 설립 당시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 2. 대학원 대학교의 설립 동향

평생교육의 도래와 고학력 사회로의 전환은 한편으로 대학원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양적 평창은 대학원 정원, 대학원 수, 그리고 재학생 수에서 확인된다. 우선 대학원 정원은 1997년 7만 7천명 수준에서 2000년에는 10만7천명, 그리고 2003년에는 12만 3천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대학원수는 1990년에 303개, 2000년에 829개, 2003년에는 1,010개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재학생수의 경우 1990년 87,163명, 2000년 229,437명, 2003년 272,331명으로 증가하였다. 대학원 수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3.3배, 재학생 수는 3.1배가 증가한 것이다.

&lt;표 5&gt; 대학원 정원 현황(단위 : 명)

구 분	1997			2000			2003		
	석사	박사	계	석사	박사	계	석사	박사	계
국·공립	19,547	3,737	23,284	26,887	4,701	31,588	29,901	5,799	35,700
사립	47,547	6,215	53,762	67,563	8,351	75,914	77,794	10,029	87,823
총 계	67,094	9,952	77,046	94,450	13,052	107,502	107,695	15,828	123,523

이처럼 대학원 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한편으로 경찰대학원 설립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째, 대학원 대학교가 허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학부교육을 기반으로 대학원을 운영하던 것과는 달리 대학원 대학교는 학부과정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다.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대학원 대학교는 2004년 현재 28개교로 대체적으로 종교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으며, 그리고 최근의 동향인 정보통신과 국제 및 언어 관련 대학원들이다.

&lt;표 6&gt; 대학원대학교 설립 현황(2004년 기준)

구 분	학 교 명	학 교 수
종 교	개신대학원대학교,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베뢰아대학원대학교,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17
과학기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서울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3
국 제	국제디자인대학원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6
기 타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서울스포츠대학원대학교	2

경찰대학원을 대학원대학교의 형태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법인이 먼저 설립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단체인 경찰청이 주도가 되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점에서 대학원대학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원 대학교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한편으로 전문적인 영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음에 서술될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대학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일반대학원에서 담당했던 것처럼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는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 9만 여명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의 경우 경찰관련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기관을 운영해야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대학원 대학교들이 모두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치된 것에 비해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원도 있다. 이러한 대학원들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방대학교 등이 있다. 이 대학원 중에서 국방대학교는 다른 3개 대학원과는 달리 명칭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대학원과 마찬가지로 국방부에서 국방 전문인력개발을 위해 설립한 대학원 대학교이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고등교육과 관련된 여러 법령에 준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한 4개 대학원의 교육과정, 학생선발 및 졸업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에 의한 대학원이 바로 경찰대학원에 해당된다. 경찰대학원도 사실상 현재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찰대학설치법』을 개정하여 설치하는 방안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며, 또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간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경찰대학원이 국방대학원처럼 동일한 정도로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시키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자료들은 이러한 노력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lt;표 7&gt;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원대학교

기관명	대학원명	과정	계열	입학정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자연과학계	-
			공학계	800
		박사	자연과학계	450
			공학계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석사	자연과학계	180
			공학계	
		박사	자연과학계	110
			공학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인문사회계	40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	66
	국방관리대학원	석사	인문사회계	57
			자연과학계	73

### 3. 범죄의 고도화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의 증가

경찰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교육에 있어서의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고학력화 현상과 더불어 이러한 사회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추세를 들 수 있다. 지식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산업사회처럼 생산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적고, 지식의 생성, 가공, 보관, 유통 등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 분야를 국한하여 보더라도 전문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도 현대 사회의 범죄의 특징이 지능화, 광역화, 첨단화, 국제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담당할 인력, 제도, 장비 등도 고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lt;표 8&gt; 사이버범죄 발생현황(2003.12.31)

연 도	총 계		
	발 생	검 거	
		건 수	인 원
2001	33,289	22,693	24,455
2002	60,068	41,900	47,252
2003	68,445	51,722	56,724

&lt;표 9&gt; 경찰공무원 학력현황(2004년 8월 기준)

계 급	대학원 수료	대학 졸업	대학 중퇴	전문대졸업	전문대중퇴	고졸 이하	합 계
치안총감	1	0	0	0	0	0	1
치안정감	2	2	0	0	0	0	4
치안감	13	5	0	0	0	1	19
경무관	22	11	2	1	0	2	38
총경	162	182	8	9	0	52	413
경정	298	662	39	39	4	249	1,291
경감	222	1455	74	124	12	1060	2,947
경위	224	2309	250	557	90	5774	9,204
경사	186	3657	1008	3207	500	23867	32,425
경장	127	8053	1101	5546	691	15034	30,552
순경	61	7917	1090	3117	307	2901	15,393
합계	1,318	24,253	3,572	12,600	1,604	48,940	92,287
비율(%)	1.4%	26.3%	3.9%	13.7%	1.7%	53%	100%

범죄의 고도화에 맞서 경찰에서도 다양한 과학수사의 기법을 개발하고, 첨단 장비들을 활용하는 노력과 함께 수사인력도 전문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Auto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컴퓨터 거짓말 탐지기, 컴퓨터 몽타주그래픽 시스템, 즉·윤적 검색 시스템, 범죄정보관리시스템(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등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법이나 장비를 사용하여 수사를 담당할 인력은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경찰관의 학력만 놓고 보면 4년제 대졸 이상이 23.6%로 사회 전체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없지만, 대학원 졸업자는 0.9%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다원화되어 가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업무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능범죄의 경우에는 첨단 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응용한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범죄자들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경찰인력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곽대경, 2002).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의 고도화 및 전문화 추세가 있고,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구성원의 학력 현황은 부정적이다.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2004년 현재 경찰은 전체 92,287명 중에서 대학원 이상 졸업자가 1,318명으로 단지 1.43%에 불과하다. 대학졸업자의 경우 전체 비율은 26.28%로 사회 전체의 구성비(2000년에 24.3%)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순경이 경장, 경사와는 달리 대졸자의 비율이 높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대졸 이상이 많이 채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계급으로 볼 때, 지휘관 이상의 계급에 해당되는 경위이상의 경우 6.78%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현장과 유리된 일반대학원 교육

일반 대학교에 경찰 관련 전공이 설치된 곳은 2004년 1월 현재 모두 84개 대학이 있고, 경찰 관련 대학원이 개설된 곳도 31개 대학교가 있으며, 그 중에서 5개 대학교에는 박사과정도 설치되어 있다. 이 대학교에 설치된 전공을 보면 경찰·교정학과, 경찰관리학과, 경찰법무행정공, 경찰법학과, 경찰소방행정학과, 경찰학과, 경찰행정지도자전공,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전공 등 9개 전공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경찰행정과 관련된 전공이 설치된 곳이 19개교로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다.

&lt;표 10&gt; 경찰 관련 대학원 설치 현황(2004년 현재)

학과명	설치 대학	석사	박사
경찰·교정학과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	
경찰관리학과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	
경찰법무행정공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	
경찰법학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경찰법학과	동아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	
경찰법학과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	
경찰소방행정학과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	
경찰학과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경찰학과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	
경찰학과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	
경찰학과	한경대학교 전자정부대학원	○	
경찰학과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	
경찰행정지도자전공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경찰행정학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	
경찰행정학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	○
경찰행정학과	관동대학교 대학원	○	○
경찰행정학과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	
경찰행정학과	대불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경찰행정학과	대불대학교 대학원	○	○
경찰행정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	○
경찰행정학과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경찰행정학과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경찰행정학과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경찰행정학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	○
경찰행정학과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	
경찰행정학과	전주대학교 대학원	○	
경찰행정학과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	
경찰행정학과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	
경찰행정학과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	
경찰행정학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	
경찰행정학전공	한려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이러한 일반대학교의 대학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 어렵다는 점이다(최종술,2002). 예컨대, 최근 경찰에서 과학적인 수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한 반면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이러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대학원을 찾아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31개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표에 제시된 교과목 명은 실제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 명이 아니라, 각 대학원에서 개설되고 있는 교과목을 분류하여 31개의 공통적인 교과목 명을 찾아낸 것이다. 개별 대학원마다 상이한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지만, 대개 명칭만 상이할 뿐 내용은 같은 것들을 모았을 때 얻어진 것이다. 그 결과 31개 교과목 명이 도출되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교과목(18개 교과목)이 경찰학의 일반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이며, 이것은 경찰학 관련 학부과정에서 이미 대부분 습득한 내용들이다. 이에 비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경찰 조직에서의 요청에 부응하는 교과목은 단지 5가지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대부분의 교과목들이 전통적인 교과목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일반대학원 교육과정의 교과목 분석(2004년 현재)

구 분	교 과 목 명
경찰학 일반	경찰과 지역사회, 경찰기획, 경찰방법, 경찰윤리학, 경찰인사, 경찰조직, 경찰학, 경찰행정학, 교정학, 교통경찰론, 한국경찰사, 비교경찰제도연구, 범죄학, 범죄심리학, 범죄예방, 보안, 소년범죄연구, 수사이론,
법 학	헌법, 법학, 민법, 형법론, 형사법이론, 형사사법론, 형사소송법
기 타	행정이론, 무도와 스포츠, 민간경비, 사회학
사회적 요청 교과목	국제범죄, 사이버범죄, 정보보안, 특수범죄연구, 피해자학

## 5. 위탁 및 파견교육에 의한 인재양성 미흡

경찰 업무의 다양화, 전문화에 따른 구성원의 인적 자원 개발은 자체적인 교육·훈련에 의한 양성과 외부 위탁에 의한 양성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체적인 인적 자원 개발은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종합경찰학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이 있다. 위탁교육의 경우 국내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과 국외 교육기관에 파견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위탁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보았다.

국내 위탁교육의 경우 위탁이 필요한 특정 분야를 선정하고, 그 분야의 우수한 전문교육기관을 확인하여 이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도 위탁교육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위탁교육은 범죄의 발생 유형에 따라 회계, 조세, 건축, 환경 등의 영역에서 위탁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탁교육은 대부분의 정부 조직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경찰에서도 최근 전문수사관을 양성하는데 이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전문수사관의 경우 보험범죄, 환경, 건설, 화재감식, 총기범죄, 전기, 가스 등의 분야에서 일반 대학원과 더불어 전문 영역의 해당 기관에 직접 위탁을 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12> 전문수사관 양성 현황 (2003년)

보험범죄	국립환경	건 설	국 과 수		전기공사	가스공사	합 계
			화재감식	총기범죄			
100	183	77	25	18	30	30	463

그런데, 이러한 국내 위탁교육이 반드시 효율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것은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대학원 이수자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첫째, 대학원 이수자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대학원을 이수한 사람은 모두 97명으로 한해 평균 24명 정도 된다. 물론,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위탁하는 것 외에 개별적으로 대학원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학원 이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경찰인력 규모에 비해 대학원 이수자의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대학원 이수자의 비율이 2001년 31명에서 2003년 25명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표 13> 계급별 대학원 이수자 현황

연도계급	2001	2002	2003	2004(1학기)	총합계
총 경	2	2	3	2	9
경 정	15	19	14	6	54
경 감	11	5	7	4	27
경 위	-	1	1	2	4
경 사	2	-	-	-	2
경 장	1	-	-	-	1
총합계	31	27	25	14	97

둘째, 대학원 진학의 경우 앞서 전문수사관의 위탁교육에서처럼 전문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다음의 전공별 대학원 이수자를 보면公安행정과 행정학을 이수하는 학생이 35명으로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학에 속하는 전공들(경찰법학, 경찰행정, 공공행정, 법학, 사법경찰행정, 사법공안, 사법행정, 형사법무)을 합친다면 이수자 수는 66명에 이르며,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결국, 위탁교육에 의해 경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lt;표 14&gt; 전공영역별 대학원 이수자 현황

전공	2001	2002	2003	2004	총합계
경영학	1			1	2
경찰법학	2	1	1		4
경찰행정	3	1	3	1	8
공공정책	1				1
공공행정	1		1		2
공안행정	6	3	4	2	15
과학수사				1	1
광고홍보	2	1			3
교통관리	2	1			3
국제마약학				1	1
노동정책	1				1
법무학	1				1
법학		1		2	3
부동산	1	2	1		4
사법경찰행정	2	2	2	1	7
사법공안			2		2
사법행정	2				2
산업재산권법무		1			1
신문방송			1		1
언론홍보		1		1	2
인사조직	1		1		2
인적자원관리			1		1
정보산업		1			1
정보통신		1			1
정책학			1		1
지방자치		1		1	2
지적재산권법무학		1			1
행정학	4	8	6	2	20
형사법무	1		1		2
환경계획		1			1
I T S				1	1
총합계	31	27	25	14	97

\*경찰학과 관련된 일반적인 전공은 음영으로 구분되었음.

셋째, 이수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등의 대학에 집중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세 기관에서 이수한 경찰은 모두 38명으로 1/3을 상회하고 있다. 이 세 기관이 경찰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탁월한 기관일 수도 있지만, 전문 영역별로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경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수급을 위해서는 특정 영역에 특화된 대학으로의 진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15> 경찰의 대학원 이수 기관 현황

교육기관	2001	2002	2003	2004	총합계
강 원 대	1		1		2
건 국 대			1		1
경 북 대	1	2	1	1	5
경 희 대	2	1			3
고 려 대	5	3	3	1	12
동 국 대	5	1	4	1	11
부 산 대	1	1	1	2	5
서 강 대	1		1		2
서 울 대			1	1	2
서울시립대	2	1			3
성균관대	4	3	1	1	9
승 실 대		2			2
아 주 대				1	1
연 세 대	5	4	4	2	15
이화여대	1				1
전 남 대	2	2	2		6
창 원 대		1			1
충 남 대		1	1		2
충 북 대	1	1	2	1	5
한 성 대				1	1
한 양 대		4	2	2	8
총 합 계	31	27	25	14	97

한편으로 경찰은 국내의 교육기관이 아닌 국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국외 훈련의 경우 단순히 전공 관련 지식과 기술의 습득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감각도 함께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찰에서 국외 위탁교육과정의 운영은 매우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국내와 마찬가지로 국외 위탁교육생을 선발할 때 자격요건 및 심의를 강화하여, 엄정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외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반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도 전문 영역을 고려하여 부서가 배정되어 전문 지식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중술, 2002).

지금까지 국외위탁교육이 이루어진 현황은 다음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03년 말 현재 국외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경찰관은 모두 24명이다. 그런데, 이 표에서 보면 매년 파견되는 인원이 18~22명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국외 위탁교육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경찰 활동’(경찰청, 2004)을 위해서는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 분명하지만, 주어진 예산으로는 이것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표 16> 경찰관 해외교육 현황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장 기	10	13	16	9	8	13	11	12	12
단 기	12	9	12	5	8	6	10	10	7

## 6. 경찰대학의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의 한계

선진국 혹은 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경찰은 속성상 보수성을 띠게 마련이며 어느 면에서 보면 그것은 경찰의 기능적 특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와 같은 고속변화의 시대, 정보화 사회에서의 경찰은 그 같은 보수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제도화된 법률이나 관행을 그대로 집행하고 반복하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변화하는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을 뒷받침하는 서비스체제의 경찰이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무리 우수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경찰관으로 채용했다 하더라도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하고 과학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며, 각종 법령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는 환경 속에서 경찰관이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이며 책임지고 완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경찰관을 위한 교육기관은 공식적으로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등 3개교가 있다. 이 중에서 중앙경찰학교는 신입순경교육을 전담하고 있고, 경찰종합학교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두 학교 모두 학위는 수여하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 경찰관들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기관은 경찰대학 밖에 없다.

경찰대학은 1981년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해 유능한 경찰간부를 양성하는 것을 이취지로 설립되었다. 2004년 현재 법학과 60명 행정학과 60명 등 2개 학과에 120명의 정원이 매년 선발되어 4개 학년 480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찰대학도 사실상 경찰의 “유능한 경찰간부”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 왜냐하면, 이 경찰대학은 정규 대학교육을 받을 연령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일반대학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찰대학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나마 ‘경찰학’을 전공한 전문가를 기른다고 보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박인우; 2002; 최웅렬, 2000).

현재 경찰대학은 교과과정이 법학과와 행정학과 2개과로 나뉘어 교양과목, 전공과목,

그리고 경찰과목으로 구분되어 일반대학처럼 4년간 운영된다. 이 경찰대학에는 일반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경찰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학장지정과목, 계절학기 운영 등을 통해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찰대학의 두 학과는 일반대학의 행정학과와 법학과, 그리고 일반사립대학의 경찰행정학과의 교과과정을 일부 혼합해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경찰관 양성이라는 학과의 목적이 담긴 전문적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

경찰학이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이라면 경찰대학에 단지 행정학과와 법학과 등 두 학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일반학과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이 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인 경찰과목도 경찰기능의 전 분야를 망라할 수밖에 없으며, 경찰 직무에 필요한 고도의 직업적 전문성을 다루는 교과목을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의 경찰대학은 경찰의 전문성을 강조하여 일반학과의 이름이 아닌 독특한 학과들을 개설하고 있다. 예컨대, 대만의 경우 1953년부터 중앙경관학교에 4년제 대학과정을 신설하여 25세 이하의 고졸이상 학력소지자를 모집하여 4년제 교육 후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경위로 임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앙학교는 우리나라의 경찰대학과는 달리 경찰행정학과 형사경찰학과, 교정학과, 외사경찰학과, 공안안전학과, 전산학과, 감식학과, 국경경찰학과, 수상경찰학과, 행정관리학과, 법률학과, 범죄방지학과, 소방학과 등 무려 14개 학과로 나누어 각 학과의 특성에 맞춰 교육하고 있다(정진환, 1996).

평생교육 사회에서 경찰분야에서 세분화된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직 경찰의 교육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위과정의 개설이 필수적이다. 이 학위과정은 경찰대학보다는 기능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세분화된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하여 전문적인 경찰관을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경찰방법학과, 경찰수사학과, 경찰경비학과, 경찰교통학과, 경찰정보학과, 경찰보안학과, 지역정보학과, 국제관계학과 등이 개설될 수 있을 것이다(최응렬, 1997).

사실 경찰대학의 설립이 추진되던 시기만 하더라도 대학교육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대학원보다는 대학이 먼저 고려되었을 것이다. 경찰대학이 설립된 지 23년이 지난 현재 시대적 상황은 대학이 아닌 대학원 중심의 교육으로 변하고 있다. 즉, 현재 사회

에서는 대학 졸업자를 더 이상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갖추었을 때 전문적 소양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점은 23년 전에 경찰대학을 설립할 때 제시한 그 필요성이 현재 경찰대학원의 설립 필요성과 매우 흡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찰대학을 설립 할 때의 취지는 “경찰교육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경찰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문직업인의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려면 4년제 경찰대학이 신설되어야 한다”(김충남, 2004:168)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경찰직무의 특수성 측면에서 볼 때 그 기능이 광범위하면서도 근무여건상 특별한 체력이 요구되며, 직무수행의 과정 및 결과가 국민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관의 직무는 양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개개 경찰관이 담당하는 업무 자체도 질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업무분야마다 방대한 법체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p.168)

현재 상황에서는 위의 주장을 경찰대학보다 경찰대학원 설립과 관련하여 제시할 경우 더욱 설득력이 있다. 결국, 경찰대학은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데는 성공했을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교육훈련기관의 문제

경찰관을 위한 학위과정은 경찰업무와 관련된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전공지식을 갖춘 고급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단순히 학위를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위탁교육이나, 외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적격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직은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구성원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찰조직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직무연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찰종합학교와 신입순경교육을 전담하는 중앙경찰학교가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대학 부설 경찰수사연수소를 통해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찰관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이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전문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김희중, 1997; 최선우, 2000; 허경미, 2002). 첫째, 중앙경찰학교와 경찰종합학교에서 개설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중복된 내용이 많은 점이다. 예컨대, 현재 전문직무과정의 인터넷과정과 경찰종합학교의 인터넷과정이 교육대상에 대한 차별화를 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며 수사보안연구소의 사이버범죄수사과정과 컴퓨터보안수사과정의 교육내용은 대동소이함을 보이고 있다.

둘째, 동일한 교육내용이 반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표는 경찰수사보안연구소의 정보화 관련 과정에서 제공되는 강좌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강좌가 여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컴퓨터범죄수사’는 조사간부과정, 조사실무과정, 형사반장과정, 형사실무과정, 지능사범수사과정 등에서 시간만 상이할 뿐 동일한 강좌명으로 제공되고 있다.

셋째, 교과목의 수가 너무 많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찰수사보안연구소의 과정들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강좌들이 시간만 상이하게 배정되어 상이한 과정에 편성되어 있다(유영현, 1999). 이처럼 동일한 강좌에 상이한 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한다. 우선, 각 강좌가 특정의 내용을 가르치는데 목적을 두기보다 단지 이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강좌가 독특한 내용에 맞춰 구성될 수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강좌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의 시간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능한 시간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 강좌들이 훈련기간에 비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넷째,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이 단계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경찰관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단계성이 없이, 같은 과목을 매번 반복해서 배우도록 편성된 교과목들에서 확인된다. 만약 단계성이 있다면, 이러한 과목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될 수가 없으며, 점차적으로 심화된 내용 또는 상급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을 것이다.

&lt;표 17&gt; 경찰수사보안연수소의 정보화 관련 과정의 강좌들

과 정 명	강 좌 명	시 간
치안정책과정	미래정보화사회의 전망	2
	정보사회의 홍보전략	2
고급간부경정과정	정보화사회와 치안행정	2
고급간부경감과정	정보화사회와 치안행정	3
조사간부과정	컴퓨터범죄수사	14
	지적재산권침해수사	10
조사실무과정	컴퓨터범죄수사	7
	신용카드범죄조사	9
	지적재산권침해수사	9
형사반장과정	컴퓨터범죄수사	7
	신용카드범죄조사	7
형사실무과정	컴퓨터범죄수사	5
지능사범수사과정	컴퓨터범죄수사	20
	신용카드범죄조사	10
	지적재산권침해수사	10
컴퓨터범죄수사과정	컴퓨터구조의 이해 및 운영체제 활용	20
	PC통신 이용범죄 수사	10
	인터넷관련 범죄수사	22
	컴퓨터범죄증거의 보전 및 관독	13
	컴퓨터범죄수사 및 의술	13
	해킹범죄수사	10
	금융기관 컴퓨터 범죄수사	3
	컴퓨터 범죄수사 사례	3
	컴퓨터바이러스 및 백신	5
	컴퓨터시스템 보안	5
보안간부연수과정	PC기초 및 운영체제	4
	PC통신 검색요령	4

마지막으로 전문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관을 위한 교육훈련은 아직도 법률지식, 실무과목, 술과 훈련 등에만 집중되고 있다(최선우, 2000).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순경시험을 통해 채용되고 있으며, 경찰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단지 순경신임교육을 통해 일반적인 지식만 습득한 상태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 순경신임교육 이후에도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경찰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신입교육의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필요한 국가관의 확립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소양과목과 경찰 업무수행을 준비하기 위한 교양과목과 실무과목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직자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신입교육과 유사한 교과목을 반복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전문적 교육을 시행할 물적·인적 여건이 되어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찰종합학교와 중앙경찰학교의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1999년 12월 이후 경찰은 경찰대개혁의 핵심과제로 경찰교육개혁을 선정하여 교육, 업무, 그리고 승진의 삼위일체를 강조하면서, 경찰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 그 중에서 총경급 승진자에 대한 고위정책과정, 경정 및 경감급 승진자에 대한 기본 교육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특징적인 변화를 들면, 기간이 총경급의 경우 3주에서 22주로 대폭 늘어났다. 그런데, 교과목의 경우 직무과목에서 소양과목 위주로 변경되었다. 이 늘어난 기간에는 일반적인 국내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결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게 되었다(허경미, 2002). 경정 및 경감급의 경우에는 기간도 축소되고, 내용도 소양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고급 전문 인력 육성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존의 교육기관을 개혁하는 것으로 전문적 인력 육성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 조직 자체적인 또는 대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문적, 실무적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 내에 대학원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최선우, 2000). 게다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사회의 학력증가 현상으로 임용되는 순경이 대부분 대학 이상의 학위를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상위의 학위과정이 개설되는 것이 적합하다.

## 제3장 경찰대학원 설립 요건과 현재 여건

경찰대학원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찰대학은 특별법을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이 경찰대학에 추가로 개설되는 대학원 과정 역시 국방대학원처럼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대학원이 설치되어 운영될 때에는 수여하는 학위에 대한 적절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대학원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원 운영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법령들을 중심으로 경찰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요건들을 확인하고, 이것을 현재 경찰대학의 인적 및 물적 현황과 비교하여 경찰대학원 설립의 현실성을 살펴보았다.

### 1. 대학원 설립·운영 관련 법령 및 규칙

#### 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은 대학과 대학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이 법에는 대학의 설립, 학생선발,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이 대학유형별로 규정되어 있다. 대학원과 관련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경찰대학원의 설립 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학원과 대학원대학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원은 크게 대학에 개설되는 대학원과 대학이 없이 설치되는

대학원대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대학원대학은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대학원의 경우, 이미 경찰대학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29조 ①항에 따라 대학원을 둘 수도 있고, 또 경찰이 국가정보화대학원과 국방대학교처럼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대학원대학을 따로 설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나중에 언급되는 설립의 기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

제29조 (대학원)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②대학원에 학위과정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대학에 두는 대학원의 종류,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2)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기본적으로 석사과정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은 4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칙에 따라서는 수업연한이 단축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국방대학교의 안보과정의 경우 44주 만에 종료되는데, 이 경우 2년의 기한에 위배되기 때문에 학위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대학원의 입학자격은 석사과정의 경우 학사학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앞서 제시한 경찰 인력 구조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찰관의 최종학력은 고졸이다. 이점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학사학위부터 획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판단된다(박인우, 2002). 이와 더불어 전문대학 졸업 학력을 가진 구성원들의 편입학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제31조 (수업연한) ①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②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 각각 2년 이상
2.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 4년 이상

③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33조 (입학자격)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3) 학위 수여

제35조 (학위의 수여)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대학원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원의 학위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가 있다. 이 학위는 다음에 설명되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다만,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중도에 퇴학할 경우 석사학위 자격을 갖춘 학생에 한해 학위를 수여할 수도 있다. 경찰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 개설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석박사 통합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개설도 시대적 추세를 고려할 때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23년전 경찰대학을 설립할 때 범했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고등교육법시행령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대학과 관련된 조문들이 대부분이며, 이와 더불어 대학원에 관련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는 이 영에서 대학원과 관련된 조문들을 발췌한 것이다.

### (1) 대학원의 종류

제21조 (대학원의 종류)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종류는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방송·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중 하나에 한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0.11.28>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원은 대학에 개설된 것과 대학원대학교 등 두 가지 형태였다. 이러한 대학원은 다시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그리고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된다. 일반대학원은 대개 학술연구가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대학원을 말하고, 전문대학원은 특정 직업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이다. 마지막으로 특수대학원은 재교육 차원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대학교에는 일반대학원을 둘 수가 없고,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만을 설치할 수 있다. 경찰대학원의 경우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대학원 보다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 대학원을 두는 쪽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2) 대학원의 학위와 협동과정

제22조 (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제23조 (협동과정)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외에 2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전형적인 대학원인 일반대학원의 학위는 석사와 박사가 있는 반면,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학위는 석사 학위로 제한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고, 그에 따라 박사학위도 수여할 수가 있다.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대학원의 경우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경찰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설치하는 것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전문대학원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단지 석사과정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더라도 박사과정에 대한 규정도 언급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으로 대학원에는 협동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2개 이상의 전공이 협동하여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하여 설치 및 운영을 할 수도 있다. 경찰대학원의 경우에는 특별히 산업체 또는 관련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협동과정의 설치에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대학원 위원회

제24조 (대학원위원회)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대학원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학원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한편,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대학원 교육과정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도 한다. 경찰대학원의 경우에도 대학원위원회와 더불어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 (4) 대학원의 정원

대학원의 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에 관한 정원책정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다음에 설명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대학설립운영시행규칙』 등에서 자세히 언급된다.

경찰대학원과 관련하여 정원 외 입학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외국인이 본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위탁학생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30조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은 그 과정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에 관한 정원책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②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입학할 수 있으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인한 재적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9>

1.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5) 학위의 종류와 심사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규정한다.

그렇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를 크게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학술학위는 일반대학원에서 주로 수여하고, 전문학위는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 학칙에 의해 학술학위를 수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위논문의 제출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학위논문의 경우 전문대학원은 다른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즉,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논문은 학교의 선택권이 된다.

경찰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이 아닌 전문대학원의 설립이 적절하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시험은 공통적으로 규정하되 학위논문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가진다. 즉, 학생들에게 학위논문 제출을 의무화할 수도 있고, 과제물 제출, 인턴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과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43조 (학위의 종류)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44조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 행한다.

제45조 (학위논문심사료)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다.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종 대학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준수해야 할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두 법령에 비하여 규정은 실제 대학원을 설립할 때 갖추어야 하는 교사(校舍), 교수, 정원계산 등과 같은 보다 자세한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경찰대학원 설립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단법인에 의한 대학원대학교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전문대학원의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규정과 그에 따른 시행규칙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교 사

제4조 (교사) ①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②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중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교육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지원시설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 갖추 수 있도록 하며,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현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부속시설중 부속병원을 갖추어야 하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30, 2004.3.5>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의 면적은 별표 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기본시설에는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이 포함된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별표3] 교사 기준면적(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3항 관련)

학생1인당 교사기준면적 :

인문사회 12㎡, 자연과학 17㎡, 공학 20㎡, 예체능 19㎡, 의학 20㎡

교육기본시설의 면적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계열별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일 경우에는 400명으로 한다. 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 등이 포함되는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다.

경찰대학원의 경우 학부의 정원이 4학년 480명이기 때문에 400명 이상에 해당된다. 물론, 현재의 경찰대학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에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시설이 마련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 (2) 교지(校地)

제5조 (교지) ①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4.3.5>

학교의 부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마련하되 기준면적 이상을 확

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별표 4]에 정리되어 있는데, 경찰대학원의 경우 400명 초과 1,000명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사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표 18>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4] 교지기준면적(제5조제1항관련) (단위 : m<sup>2</sup>)

학생전원	400명이하	400명초과 1,000명미만	1,000명이상
면적	교사건축면적이상	교사기준면적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이상

※ 비교 : 1.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을 말한다.

(3) 교 원

제6조 (교원) ①대학(교육대학을 제외한다)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학생수를 말한다.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 대학의 학생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수
3. 대학원 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

③교육대학은 2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원 4인을 확보하여야 하고, 2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1학급을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과 동법시행령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등(이하 "겸임 및 초빙교원등"이라 한다)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 및 초빙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30>

교육기본시설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수도 대학원 설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학에서 필요한 교원의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정원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대학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학에 대학원을 개설하는 경우와 대학원대학교를 개설하는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 경찰대학원의 경우 대학에 대학원을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된다. 이 경우의 정원 계산은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 수가 된다. 예컨대, 현재 경찰대학의 경우 480명이 정원이라고 보면, 이 수에 대학원 예정 정원의 1.5배만큼 더해 주면된다.

학생정원이 계산되면 이것을 [별표5]에 교원산출기준으로 명시된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누어주면 필요한 교원의 수가 산출된다. 경찰대학원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이라고 본다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5명이 되기 때문에 경찰대학만 보면 필요한 교수가 19명이 된다. 그리고, 매년 30명의 경찰대학원생을 선발할 경우,  $60명 \times 1.5 = 90명$ , 따라서 학생 총정원은 570명이 되고, 필요한 교수 수는 23명이 된다. 즉, 경찰대학원 설립에 의해 추가로 필요로 하는 교원은 4명이 된다. 추가로 요구되는 교원을 모두 전임으로 채용할 필요는 없다. 겸임 또는 초빙교원의 형태로 정원의 1/5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전문대학원으로 설립할 경우 이와는 상이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4명이 아니라, 8명이 된다.

<표 19>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5] 교원 산출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인문사회	자연과학·공학·예체능	의 학
교원1인당 학생수	25명	20명	8명

#### 라.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이 규칙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전체 규정은 대학 설립의 신청부터 허가, 위치변경 등

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경찰대학원과 관련된 것으로는 겸임교원 산정기준이 있다.

**제9조 (겸임교원 산정기준)**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이를 버린다.

앞서 대학 및 대학원에는 전임이 아닌 기업체, 또는 연구소 등 다른 곳에 주 근무처를 갖고 있는 전문가를 겸임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겸임교원도 교원의 수에 포함되는데 이를 계산하는 방식은 주당 수업 시간을 9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예컨대, 겸임교원이 3명이 있고, 각자 주당 3시간씩 가르친다면, 1명의 전임에 해당된다.

한편으로 현재는 없어진 「대학원 규정」중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의 부칙에 의해 여전히 효력이 있는 제3조에는 이 겸임교원에 대하여 전체 교원의 1/3이상을 겸임으로 배치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이 규정에서는 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을 1.5배가 아닌 2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경찰대학원이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경우 정원은 1.5배가 아닌 2배수가 된다. 즉 학년 당 30명일 경우, 총 60명이고, 이것은 100명미만이 되기 때문에 100명의 2배수인 200명이 정원이 된다.

**<구 대학원규정>**

**제3조 (전문대학원의 교원배치)**

- ①전문대학원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수중 당해 전문대학원의 계열별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를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②전문대학원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수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겸임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 2.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종류별 주요 사항 비교

지금까지 대학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4 가지 법령 및 규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앞서 개별적으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여 대학원의 유형과 그에 따른 주요 사항들을 서로 비교하여 경찰대학원의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찾아내고자 한다.

<표 20> 대학원 종류별 주요사항 비교

구 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목 적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전문 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수업형태	주간	주간	야간·계절제
학위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원칙), 학칙으로 박사과정 설치 가능	석사과정
수여학위	학술학위	전문학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 수여 가능	전문학위
교육내용	학술이론 및 연구방법론	실천적 이론 및 실무위주 교육	실천적 이론 및 실무교육
학부 교원·교사 활용	학부와 연계	학부와 연계되어 있으나 별도의 대학원 전임교원·교사 확보	학부와 연계
배출인력	연구 및 교수인력(R&D)의 양성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인력의 양성	직업인의 계속교육

첫째, 대학원의 목적으로 볼 때 경찰대학원은 수사, 보안, 국제범죄 등과 같은 전문 영역에 있어서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특수대학원의 경우 계속교육의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가 양성에는 전문대학원보다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대학원의 목적 차원에서 보면 전문대학원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lt;표 21&gt; 경찰 전공 관련 설치 대학원 종류와 학위과정

종 류	박 사	석 사	총 합 계
일반대학원	5	7	12
특수대학원		27	27
총 합 계	5	34	39

둘째, 수업형태로 보면, 특수대학원은 야간과 계절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직 경찰관들에게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직무수행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야간이나 계절제보다는 주간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생들도 전적으로 업무를 떠나 학업에만 매달릴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위과정의 경우 경찰대학의 설립에서처럼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박사과정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경찰대학원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보면 특수대학원은 적합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수여학위의 경우 경찰대학원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의 전문성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석사과정에서도 전문학위가 수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대학원의 경찰관련 전공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학술이론보다는 실천적 이론이나 실무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대개 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식을 분석, 새로운 지식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이에 비해 전문대학원은 실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부의 교원 교사 활용 측면에서 보면 경찰대학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수업이 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자적인 시설과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경찰대학의 시설이 충분하기 때

문에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추가로 확보된 교원도 경찰대학과 함께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출인력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경찰 영역에서의 전문가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문대학원이 특수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보다 더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학술적인 연구를 위해서라면 기존의 대학원으로 진학을 유도하면 되고, 계속교육도 기존의 특수대학원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 3.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설립 요건과 현재의 여건

#### 가. 법령의 설립 요건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원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건으로는 교원 수와 교육기본시설의 확보 등 두 가지이다. 먼저 교육기본시설의 확보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경우 기본적으로 인원에 해당되는 면적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경찰대학원이 학년 당 30명을 선발할 경우 정원은 2년간 60명이기 때문에 대학원대학의 기준인 100명에 미달되고, 따라서 100명의 2배수인 200명이 된다. 이 경우 교육기본시설은 인문사회계열의 학생 1명 당 12㎡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2400㎡가 된다. 물론, 이에 해당하는 교지도 확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교원의 경우 일반대학원을 설립할 경우에는 정원과는 상관없이 석사과정은 최소 5명, 박사과정은 최소 7명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 특수대학원은 석사과정만 설치되기 때문에 최소 3명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원의 경우 정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100명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의 교원 1인당 25명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4명이 필요하고, 구(舊) 「대학원규정」 제3조에 규정된 정원의 2배수 기준을 적용하면 최소 8명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대학원이 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설립할 경우 필요한 교원은 학생정원이 200명이기 때문에 역시 8명이 된다.

## 나. 경찰대학의 현재 여건

경찰대학은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해 유능한 경찰간부 양성의 취지로 1981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경찰대학에는 법학과 60명, 행정학과 60명 등 2개 학과에 120명의 정원으로 4개 학년 480명이 총 정원이다. 경찰대학의 졸업생은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받을 뿐만 아니라 경찰간부인 경위로 임용된다. 이점에서 경찰대학은 기존의 4년제 대학과정과 동시에 경찰의 초급간부 양성이라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표 22> 경찰대학생 현황(2004. 4월 기준) (괄호안은 여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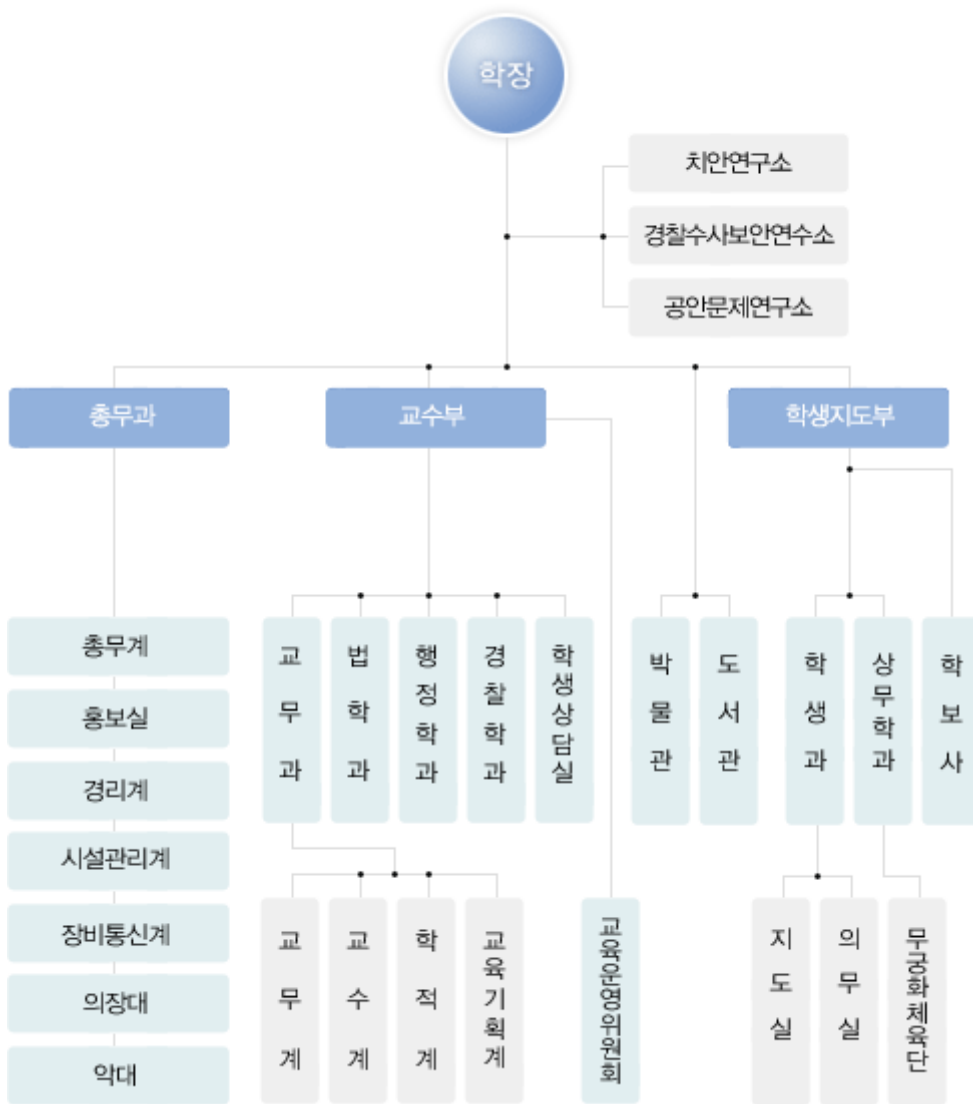
	총 원	1학년(제24기)	2학년(제23기)	3학년(제22기)	4학년(제21기)
계	474	119(12)	118(11)	118(11)	119(11)
법 학 과	237	59(6)	59(5)	59(6)	60(6)
행정학과	237	60(6)	59(6)	59(5)	59(5)

경찰대학의 주요기능은 현행 경찰대학 기구표에 잘 나타나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제에 따르면 학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고, 하부조직으로 교수부, 학생지도부를 설치할 수 있고,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과를 3개 정도 설치가 가능하다. 각 부의 부장은 경무관, 각 과의 과장은 총경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수사보안연구소, 치안연구소, 공안문제연구소 등이 부설되어 있다.

경찰대학의 기구표에서 특징적인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학교육과 간부양성이라는 두 가지 기능이 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첫째, 대학교육의 기능 측면에서 보면, 교수부의 3개 학과(법학과, 행정학과, 경찰학과), 교무과, 학생상담실, 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학생지도부의 학생과, 학보사가 해당된다. 총무과는 일부의 인원이 대학교육에 해당되지만 과별로 구분은 되지 않는다. 둘째, 현 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기관들이 있는데, 앞서 언급한 3개 부설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경찰대학의 여건은 이 중에서 대학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만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의장대, 축구단과 육상부 등으로 구성된 상무학과의 무궁화체육단 등은 제외된다.



<그림 1> 경찰대학 기구표(출처 : 경찰대학 홈페이지)

## (1) 교원 확보

경찰대학원 설립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인원 중에서 교원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현재 경찰대학에서 교원에 해당되는 인원은 교수부에 속해 있는 별정직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에 해당되는 18명이다. 이외에 현직 경찰관이면서 사실상 교육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1명의 '교수요원'들은 규정상으로 볼 때, 교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 교수요원들이 전임처럼 경찰대학에 소속되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대학의 객원교수 또는 초빙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변경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4명의 교수요원은 단순히 발령을 내는 것만으로도 객원교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무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10명의 무도사범들의 경우에도 객원교수의 지위를 부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정직의 연구관, 그 외의 경찰관들은 교원에 포함시킬 수 없다.

<표 23> 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2004년 6월 1일 기준 일부분 발췌)

직 급 별		경 찰 관										별 정 직						
		소계	치안정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계	연구관(2)	연구관(3)	연구관(4)	연구관(5)	연구담당(6)	교수
교수부	교 무	24	1	1	2	2	6	2	6	4								
	학 과	12				4	7			1	18							18
학생지도부	학 생 과	19	1	1	1	5	8	1	1	1								
	상 무 학 과	10				1		1	3	2	3							
부설기관	경찰수사보안연구소	21				4	5	10	2									
	치안연구소	7			1	1	4	1										
	공안문제연구소	3				1	1		1		16	1	2	8	3	2		

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경찰대학의 교원은 교수 18명, 4명의 교수요원, 10명의 무도사범 등 총 32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볼 때 교원은 교수에 해당되는 18명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경찰대학원의 학부과정만 볼 때 교원확보율은 총정원 480명을 인문사회계열 교수 1인당 학생 수인 25명으로 나누어 보면 19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95%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국 대학의 평균이 50%를 밑도는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설립할 경우 앞서 계산하였듯이, 총정원이 200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8명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8명의 교수는 경찰대학의 교수 중에서 일부를 옮겨오는 것과 추가로 확보하는 것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만, 경찰대학의 교원확보율도 현재 100%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2) 교육기본시설 확보

교육기본시설에는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이 포함된다. 경찰대학은 현재 본관, 강의동, 시청각교육센터, 도서관, 학생회관, 식당, 기숙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찰대학원을 설립할 경우 이 시설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설립할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대학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의 규모는 2,400㎡에 해당된다.

시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신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대학은 대학원의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으며, 학부와 공유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물론, 각 대학은 총 정원의 기준으로 볼 때 교육인적자원부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경찰대학의 기존시설이 학부과정의 경찰대학생과 신설되는 경찰대학원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면 굳이 새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대학의 시설을 살펴보면, 연구실, 강의실, 도서관의 총 면적은 7,629㎡에 해당된다. 현재 경찰대학의 총 정원이 480명이므로, 필요한 면적은  $480 \times 12\text{m}^2 = 5,760\text{m}^2$ 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은 경찰대학의 학생들에게는 아주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약 1,869㎡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상을 고려할 때 경찰대학원을 경찰대학에 개설할 경우 추가로 시설을 확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시설 중에서 일부를 경찰대학원 용도로 돌리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찰대학원이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교육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습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시설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24> 경찰대학 교육기본시설(강의실과 도서관)

구 분	면 적	실 수	면적 소계
연구실	24.6	29	713.4
	25.5	8	204
일반강의실	98.4	13	1,279.2
	73.8	2	147.6
	158.4	3	475.2
	196.8	4	787.2
어학강의실	49.2	8	393.6
영상교육실	205.2	1	205.2
A/V실	196.8	1	196.8
LAB실	196.8	1	196.8
현장감식실습실	295.2	1	295.2
컴퓨터실	196.8	2	393.6
	158.4	1	158.4
세미나실	49.2	3	147.6
	63.6	1	63.6
도서관	1971.6	1	1,971.6
총 계		3,283.8	60

## 제4장 경찰대학원 설립 관련 법령 개정

경찰대학원의 설치에 기본적으로 기존의 경찰대학에 대학원과정을 개설하는 방안, 독립적인 재단법인을 통하여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있다. 한편으로 경찰대학 자체를 폐지하고, 경찰대학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경찰대학에 관한 법령을 굳이 폐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안 중에서 독립적인 법인을 기반으로 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법령의 개정은 불필요하다. 물론, 새로운 법인과 대학원대학교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관, 학칙 등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경찰대학원 설립과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기존의 경찰대학에 대학원 과정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특별법인 『경찰대학설치법』 중에서 어느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되, 기존의 특별법에 의해 대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법령을 참조하고자 한다. 기존의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학원 중에서 특히 경찰대학원과 같은 전문대학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두 개의 대학원(국방대학교, 국가정보대학원)의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령개정과 관련하여서 구체적인 구문 작성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상 여러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적인 팀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담당할 T/F를 이미 구성하여 법조문의 초안이 이미 작성된 상태이다. 이 T/F의 활동을 개략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9차에 걸친 T/F팀 회의 실시
- 기능별 추진일정·세부 실천계획 수립(1차)
-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 초안 작성(23차)
-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 및 조직안 검토·수정(47차)
-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 경찰학과 교수요원 회의(9. 4)
- 경찰대학설치법 및 조직안 확정(89차)

- 경찰대학설치법개정안 및 조직안 교수부장 보고(9. 21)
- 경찰대학원 설립 계획(안) 경찰청장 수결(11. 6)

## 1.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원 법령 검토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두 개의 특별법과 각각의 시행령을 검토하였다. 이 네 가지 법령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에는 이 네 가지 법령 중에서 경찰대학원과 관련된 항목들을 비교 분석하고, 경찰대학의 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항목별 비교는 법령을 그대로 제시하기보다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법령은 부록을 참조하면 된다.

### 가. 목 적

대학원의 설립 목적은 대학원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대학원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국방대학교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의 독특성은 단순히 군 전문인력의 양성이라고 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적 규정에 의해 나중에 언급되는 입학 자격 자체를 군의 경계를 넘어서 일반인까지도 개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비해 국가정보대학원은 정보·보안과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국가정보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만 두고 보면 전적으로 국가정보원에 필요로 하는 인력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우 폐쇄적임을 알 수 있다.

경찰대학원의 경우 국가정보대학원보다는 국방대학교처럼 경찰관련 업무를 규정하면 서도 다소 폭넓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의 입학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경찰대학원은 치안, 수사 등과 같이 협의의 역량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

&lt;표 25&gt;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원의 주요 항목별 정리

	국방대학교설치법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목 적	· 국가안전보장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정보·보안, 범죄수사 전문인력 양성
설 치	· 국방부장관 소속	· 국가정보원장 소속
대학원	·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과 정	· 비학위 학위 기본과정: 1년 과정 · 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2년 · 특별과정	· 비학위 단기특설과정 · 학위과정: 국가정보학 전공 석사(2년) 및 박사학위과정(3년)
학위과정의 입학자격	1. 고등교육법 제33조의 규정 2. 현역장교 중 각군대학 졸업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4. 기관/단체의 간부 5. 외국군 장교 기타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학자격은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 허가 가능
학위수여	고등교육법 제35조의 규정	교육관계법령
대학원장	· 장관급 장교 또는 교수 중에서 임명	· 별정직 국가공무원 · 국가정보원의 직원 근무 경력자
교수임용	· 특정직 국가공무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 고등교육법 제16조 · 명예교수
학생정원	· 국방부령으로 정함	· 학칙으로 정함

#### 나. 대학원 소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론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 앞의 표에서도 국방대학교는 국방부장관의 관할로 되어 있으며, 국가정보대학원은 국정원장의 관할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경찰대학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관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국방대학교가 참모총장의 관할이 아닌 국방부장관의 관할이라는 점이 전혀 문제가 없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경찰의 경우도 행정자치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자치부 장관의 관할로 설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다. 대학원의 종류

국방대학교의 경우 명칭 자체에서 짐작해 볼 수 있듯이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대개 학부과정이 설치될 경우 ‘대학교’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대학원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 ‘대학원’이 명칭에 포함된다. 그런데, 학부와 대학원 과정이 모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그 하위 기관으로 대학과 대학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방대학교는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등 2개 대학원과 합동참모대학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보다는 대학교로 명칭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국가정보대학원은 단지 대학원 과정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으로 이해된다.

경찰대학원을 『경찰대학설치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경찰대학에 추가로 개설할 경우 명칭은 현재와 같이 경찰대학으로 하기보다 ‘경찰대학교’로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불어, 경찰대학원만을 별도의 경찰청 직속 독립기관으로 둘 것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라. 과 정

교육인적자원의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대학원 과정은 대학원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대학원의 경우 특정의 대학원 유형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을 따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위의 두 기관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그렇다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 법령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별법의 조문 중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관계법령 조문을 그대로 명기하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 그 외의 조문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정에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학위과정의 경우에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경우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가 있고,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만 둘 수가 있다. 국방대학교는 석사과정만 개설하고 있는 반면 국가정보대학원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모두 개설하고 있다. 그런데, 두 기관 모두 대학원이 어느 유형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특수대학원일 경우 수업이 모두 밤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도 특별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 한편으로 국가정보대학원의 경우 박사학위과정이 고등교육법의 4년과는 달리 3년으로 되어 있다.

한편으로 두 기관 모두 단기 또는 특별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국방대학교의 단기과정은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학위과정을 축약시켜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학위는 수여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대학원도 비학위 단기 특설 과정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 마. 입학자격

대학원의 입학자격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국방대학교와 국가정보대학원은 모두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방대학교는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입학자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자격기준을 보면 첫째, 소속 구성원 중에서는 현역장교 중에서 각군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관련 기관의 경우 4급 이상의 공무원, 기관/단체의 간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군의 장교도 국방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에 비해 국가정보대학원의 경우 입학자격이 그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고등교육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방대학교와는 달리 입학전형 방법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명기하고 있다. 경찰대학원의 경우에는 국방대학교와 같이 소속 구성원에 대한 자격과 관련 기관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바. 학위수여

고등교육법 제35조의 규정에는 대학원 학칙에 정해진 대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석

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이러한 규정이 보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전문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칙이 규정하면 학술학위도 수여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학위 수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또 학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의 특별법에는 어떤 학위를 수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 어떤 형태의 대학원인지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굳이 수여할 학위를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사. 대학원장

일반 대학교에는 대학의 총장이 있고, 그 아래에 부총장, 그리고 그 다음으로 대학원장이 있다. 국방대학교의 경우에도 2개의 대학원과 1개의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는 총장과 부총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국가정보대학원의 경우 대학원장만이 임명된다.

국방대학원의 총장은 장관급의 장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역 군인이어야 한다. 이에 비해 대학원장은 교수 중에서 임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에 언급되겠지만, 국방대학교의 경우 일반인 중에서도 교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역이 아닌 일반인이 대학원장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국가정보대학원의 경우 대학원장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아. 교수 임용

교수임용에 관해서는 고등교육법 16조에 규정되어 있다. 두 기관 모두 이 법을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는 구성원 중에서도 임명이 가능하겠지만, 외부의 일반인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국방대학교의 경우 일반인

중에서 교수로 임용할 경우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되 교육공무원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국가정보대학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경찰대학교의 경우 교수의 신분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국방대학교처럼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자. 학생정원

일반적으로 대학원의 학생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통제를 받는다. 대학원을 설립할 때 학생의 정원은 설립 여건에 의해 정해진다. 이 여건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교원과 교육기본시설이다. 만약 이 두 가지를 충분히 갖추면, 그에 상응하는 정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대학원의 학생정원을 어디에 규정해 둘 것인지, 또는 특정 숫자로 규정해 둘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고려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 국방대학교와 국가정보대학원의 경우 모두 특별법에는 학생의 정원을 규정하지 않고,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거나 학칙으로 정한다고 함으로써 다른 방식으로 정원을 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 2. 「경찰대학설치법」의 개정 방향

경찰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두 기관의 특별법을 참조하여 「경찰대학설치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대학원을 설립할 경우 현재의 ‘경찰대학’을 ‘경찰대학교’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특별법의 명칭 자체가 「경찰대학교설치법」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현행 법에는 설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설치’에 ‘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라고 되어 있다. 이 구문은 지나치게 협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치안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과 같이 보다 폭넓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법에는 과정이 학부과정인 경찰학과정과 일반학과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문에 대학원 과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포함될 대학원 과정으로는 학위 과정으로 석사와 박사, 비학위 과정의 특별과정 등으로 규정하고, 기한은 학위과정의 경우 석사 2년, 박사 3년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넷째, 입학자격의 경우 다른 기관처럼 고등교육법 제33조를 근간으로 하되, 현직 경찰의 직위를 자격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관련기관의 구성원들에 대한 자격기준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26> 주요 항목별 「경찰대학설치법」 개정방향

	기 존	개 정
목 적	· 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	· 국가치안부문의 전문인력 양성
설 치	· 경찰청장 소속	
대학원		· 대학원 설치 근거 제시
과 정	· 학부과정인 경찰학과정과 일반학과정	· 대학원 수준의 비학위 특별과정 · 학위과정: 석사(2년) 및 박사학위과정(3년)
학위과정의 입학자격		· 고등교육법 제 33조 · 경위이상으로 현직 경력 갖춘자 · 4급 이상의 공무원 · 관련단체의 임원 이상
학위수여		· 고등교육법 제35조의 규정
총장 및 대학원장	· 학장	· 총장: 치안정감 이상 · 학장: 치안감 이상 또는 교수 중 임명
교수임용		· 고등교육법 제16조 · 특정직 국가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적용
학생정원		· 학칙으로 정함

넷째, 학위수여의 경우 현행 법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대학원을 개설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35조를 따르는 것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교수의 임용은 현행 법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학원을 위해 분명하게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법에는 제16조에 대학원 관련 교원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따르되, 교원의 신분을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정원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대학원에서 선발할 수 있는 학생정원은 다른 대학원의 예에서 밝혔듯이 설치법령이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정할 수가 있다. 이점에서 경찰대학원을 수립할 때에도 설치법령에 학생의 정원을 학칙에서 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 제5장 경찰대학원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안)

### 1. 학생선발

일반적으로 학생선발에 관한 규정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것을 근간으로 하고, 각 대학원에서는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칙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 제시되는 내용은 연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대학원에서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대학원을 설립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한 것이다.

#### 가. 지원자격

대학원의 지원 자격은 고등교육법 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학사학위를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자격이 있다.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일반대학원의 지원자격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대학을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졸업예정자 까지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박사학위과정도 이와 동등하게 석사학위를 갖춘 사람은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표 27> 일반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지원자격 예시

과 정	자격기준
석사학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독학사 포함)하였거나, 2005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li> <li>• 외국소재 정규학교에서 16년(초.중.고.대학)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li> <li>•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li> </ul>
박사학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박사학위과정 지원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분야를 이수한 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05년 2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li> </ul>

일반대학원과 달리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전문인재의 양성 또는 평생교육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다. 그렇지만, 일반대학원과 마찬가지로 지원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오히려 대학에서 타 부분을 전공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음의 표에는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지원자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28> 대학원 유형별 입학자격 예시

유형	대학원명	입학자격
전문 대학원	정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의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 예정</li> <li>•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li> <li>• 출신 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li> </ul>
	국제정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2005년 2월 졸업예정자</li> <li>•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li> <li>•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li> </ul>
	정보통신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li> </ul>
특수 대학원	경영정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li> <li>•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사학위 취득자</li> <li>※ 대학에서 타 부분을 전공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음.</li> </ul>
	교육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제 대학 졸업자(교육부에 학사학위등록된 자) 및 2004년 8월 졸업예정자</li> </ul>
	법무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2005년 2월 졸업예정자</li> <li>•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li> </ul>
	행정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육해공군, 정부 또는 민간출연 연구소, 기업체, 상기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우대</li> </ul>
특별법	국방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법 제33조의 규정</li> <li>• 현역장교 중 각군대학 졸업자</li> <li>• 4급 이상의 공무원</li> <li>• 기관/단체의 간부</li> <li>• 외국군 장교 기타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li> </ul>

그런데, 이 표에 예시된 것 중에서 행정대학원의 지원자격은 다른 대학원과는 달리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우대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경우 지원자격에는 명시하지 않지만, 기타사항으로 관련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대학원의 경우 현직교사에게 입시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우대하고 있다.

한편,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국방대학교의 경우 다른 대학원과는 달리 특정 계급, 또는 지위를 입학자격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찰대학원의 경우도 형태는 전문대학원으로 설립되더라도 입학자격은 국방대학교처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은 내부적으로 정하되 경찰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경위로 채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어도 경감 이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직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경력 5년 이상과 같은 자격조건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나. 선발방법 및 시기

대학원의 선발은 대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 1년에 2회 실시된다. 전반기는 10월에 모집하여 12월 초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후반기는 4월에 모집하여 6월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전형유형에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 있다. 특별전형이란 특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지원자들을 우대하여 선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대개의 행정대학원에서 경찰관을 우대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특별전형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해 선발이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일반전형은 모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기시험이 실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서류전형과 면접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일반전형에서의 필기시험은 대개의 경우 영어, 전공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다.

다음의 표는 현재 경찰관련 전공이 개설된 대학원의 전형유형과 전형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원이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원만이 일반전형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발은 모든 대학원이 전반기와 후반기 2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표에서 생략되었다.

<표 29> 경찰관련 대학원 입시전형 방법

설 치 대 학	전형유형		전 형 방 법
	일반	특별	
경기대학교 대학원	○	○	서류, 면접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류, 면접
계명대학교 대학원		○	서류, 면접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서류, 면접
관동대학교 대학원		○	서류, 면접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	서류, 면접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류, 면접
대불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서류, 면접
동국대학교 대학원	○	○	서류, 면접, 필기: 전공 (박사과정)
동아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	○	필답(영어), 서류, 면접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류, 면접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	서류, 면접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	서류, 면접, 필기: 논술 및 영어(일반전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서류, 면접, 필기(전공)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류, 면접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류, 면접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류, 면접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	서류, 면접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	서류, 면접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류, 면접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	서류, 면접

이상의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경찰대학원의 선발방식은 전반기와 후반기, 연 2회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전형유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전형의 경우 경감이상의 경찰관 중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와 같은 자격기준을 정하여 제한하여 실시하고, 일반전형은 그 외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일반전형의 경우 반드시 영어와 경찰기본 지식에 관하여

필기고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지원자가 합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라. 선발인원

대학원의 선발인원은 교육기본시설과 교원 등 교육여건에 의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인원은 학칙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에도 학칙에 의해 학생정원이 규정되기 때문에 대학원 자체적으로 정할 수가 있다. 아래의 표는 현재 경찰 관련 학과/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의 입학정원 현황이다. 대체적으로 60명 미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30> 경찰 관련 학과/전공 개설 대학원의 입학정원 현황

입학정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총 합 계
~ 20	2	5	7
21 ~ 40	1	6	7
41 ~ 60		5	5
61 ~ 80	1	2	3
81 ~ 100	1	1	2
101 ~ 120	1	2	3
121 ~	2	3	5
총 합 계	8	24	32

본 연구에서는 경찰대학원이 설립될 경우 대학원 선발인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자 한다. 다만 이전의 T/F활동에서 매년 3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러한 근거는 다음에 제시되는 수익과 소요예산의 비교이다.

한편으로 현재 경찰의 인력 구조 현황을 통해서도 선발인원의 적정선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의 표는 앞서 제시하였던 경찰관련대학원의 계급별 학력현황을 학위에 의해 재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lt;표 31&gt; 경찰공무원 학력현황(2004년 8월 기준)

계 급	석사수료이상	학사학위	학사학위미만	합 계(비 율*)	
치안총감	1	0	0	1	0.001%
치안정감	2	2	0	4	0.004%
치안감	13	5	1	19	0.021%
경무관	22	11	5	38	0.041%
총경	162	182	69	413	0.448%
경정	298	662	331	1,291	1.399%
경감	222	1,455	1,270	2,947	3.193%
경위	224	2,309	6,671	9,204	9.973%
경사	186	3,657	28,582	32,425	35.135%
경장	127	8,053	22,372	30,552	33.105%
순경	61	7,917	7,415	15,393	16.680%
합계	1,318	24,253	66,716	92,287	100%
비율(%)	1.4%	26.3%	72.3%	100%	

\*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중 석사수료 이상의 비율

이 표에 의하면, 경찰대학원에 입학 대상자에 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석사 수료 이상의 학위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찰은 전체에서 1.43%로 매우 저조하다. 그리고 1차적으로 입학 대상자로 볼 수 있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26.28%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앞서 언급했던 조건인 경감이상의 경찰은 2,317명으로 학사학위 소지자 중 9.6%에 해당된다. 이 비율로 보면 앞서 '경감'으로 보는 기준은 특별전형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전형의 기준은 그 이하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매년 입학자 중에서 20%를 일반인에게 허용한다고 보면, 경찰은 24명 정도가 입학하게 되며, 이것은 앞서 2,317명 중 약 1%에 해당하는 인력이다. 이 정도의 비율이면, 지원자의 확보와 경쟁률 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교육과정

### 가. 대학원 유형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어떤 유형의 대학원을 설립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할 경우 수업은 주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교과목 당 학점도 특수대학원의 2학점과는 달리 대개 3학점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반 및 전문대학원의 경우 특수대학원과는 달리 학업을 직무와 병행하지 못하고 전일제 학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대학원을 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설립할 경우 수업은 주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교과목 당 학점도 3학점이 할당된다.

현재 기존의 경찰학과 및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의 현황(<표 11> 참조)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원은 7개, 특수대학원은 24개가 설치되어 있고, 전문대학원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점에서 경찰대학원을 전문대학원 형태로 설치하는 것은 향후 경찰 전문가 양성에 있어서 전환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나. 설치 전공

대학원에 개설되는 전공은 대개 필요한 인력의 분야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경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의 학과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일반대학원의 경우 ‘경찰행정학과’로 통일되어 있는 반면, 특수대학원은 ‘경찰행정학과’가 가장 우세한 가운데 다양하게 전공명 또는 학과명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학과명과 전공명이 대부분 경찰학으로 보아도 좋을 정도로 비슷하다. 이점에서 경찰대학원을 설립할 경우 학과명과 더불어 전공명이 경찰학의 세부 영역으로 하는 것이 전문성을 살리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경찰대학 대학원 설립 방안』에 의하면 설치학과로 경찰법학과와 경찰행정학과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경찰법학과에 형사법, 범죄수사학, 경찰법 전공으로 세분하고,

경찰행정학과에는 경찰행정, 교통관리학, 경비학 등의 전공을 개설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 두 가지 학과명은 기존 대학원의 학과명과 비교해 볼 때 전문성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 오히려 전공 수준으로 제시한 명칭 중에서 특화할 분야를 정하여 학과명으로 정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전공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범죄수사학의 경우 어느 대학원에도 학과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사실, 이러한 학과는 현장과 깊이 연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 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모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의 대학원에서 이 명칭의 학과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표 32> 경찰 관련 전공 개설 대학원의 유형별 학과명 현황

학 과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총 합 계
경찰·교정학과		1	1
경찰관리학과		1	1
경찰법무행정공		1	1
경찰법학과		3	3
경찰소방행정학과		1	1
경찰학과		5	5
경찰행정지도자전공		1	1
경찰행정학과	7	10	17
경찰행정학전공		1	1
총 합 계	7	24	31

경찰대학원에 설치되는 학과나 전공은 무엇보다도 경찰 조직의 특성이 잘 반영되고, 또 경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이 어떤 분야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졸업학점

대학원의 졸업학점은 기본, 선수,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문지도, 일반선택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의 표는 현재 경찰관련 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의 졸업요구

학점의 구성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졸업학점으로 24학점을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학점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원의 졸업학점은 30학점이었다. 3학기를 9학점씩 이수할 경우 27학점이 되고, 논문관련학점이 4학기에 부여될 경우 30학점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기본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는 대학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통필수 교과목도 2-3과목씩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단지 졸업학점만을 규정하여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표 33> 경찰 관련 전공 설치 대학원의 졸업학점 구성 현황

대 학 명	대학원명	기본	선수	공통 필수	전공 필수	전공 선택	논문 지도	일반 선택	졸업학점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		4	6	8	1		24
경기대학교	대학원	3	3	6					24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		8	8	8			24
계명대학교	대학원								24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		2	4	12	4	6	28
관동대학교	대학원								24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2,3		6		12		6	24
동국대학교	대학원	3	18						24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3							24
동아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2			4	20	2		26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2		2		22~26	2		26~30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24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				14	4	6	30

경찰대학원이 설립된다면, 기본이수와 더불어 동국대 대학원처럼 선수과목을 다수 지정하여 경찰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기본적인 수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졸업학점은 다른 전문대학원처럼 24학점제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6장 경찰대학원 예산 운영 방향

대학원 운영 예산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그 자체로써 매우 방대한 작업이다. 물론, 예산 중에서 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은 매우 간단하지만, 지출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지출의 경우가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문이 시설과 설비, 그리고 인건비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시설은 특정 연도의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항목이며, 인건비의 경우도 어느 정도 수준의 교원을 채용하고, 또 직원을 배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시설 및 설비, 그리고 인력 구성에 관한 결정은 경찰에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정책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 1. 수 입

일반 대학교에서 대학원의 운영예산을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보면, 수입의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 수입과 논문지도비가 있다. 이 중에서 논문지도비는 실비로 징수하기 때문에 수입 항목으로써 의미가 없고 사실상 등록금 수입이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경찰대학원에서 매년 30명, 총 60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총 수입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30,000\text{원} \times 60\text{명} = 121,800,000\text{원}$ 이 된다.

그런데, 경찰대학원 학생 중에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에서 전략적으로 양성하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학비를 전액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학 정원 중에서 일반인 입학율 20%로 할 경우 60명 중에서 48명이 경찰공무원이 되며, 이 금액만큼의 예산이 증액·신청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정도의 예산은 기존의 교육훈련 경비 중에서 일부를 전환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지 출

### 가. 강사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은 대학원 전임 교원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원 강의를 추가로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에 대한 강의료 지급은 초과수당의 형태로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대학원 강의에 대한 비용은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형태가 된다.

경찰대학원을 설립할 경우에도 대학원 전임 교수를 채용하기보다 경찰대학의 강의를 우선적으로 담당하고, 경찰대학원의 강의 추가로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경찰대학원의 강의에 대한 비용을 모두 강사료로 계산할 경우 예상되는 강사료 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매학기 개설 교과목 수 : 2개 학과 × 3개 전공 × 2과목 = 12 과목
- 시간 당 강사료 : 서울대(국립대) 기준 시간 당 39,000원
- 총강사료 : 12과목 × 16주 × 3학점 × 39,000원 = 22,464,000원

<표 34> 주요대학 대학원강사료(2003년)

대 학	강 사 료
서 강 대	45,000원
연 세 대	44,000원
고 려 대	43,900원
서 원 대	40,000원
서 울 대	39,000원
아 주 대	37,000원
한 양 대	36,000원
경 회 대	35,000원
대 구 대	30,000원
동 국 대	25,000원

## 나. 교육과정 운영 경비

실제 강의와 관련하여 지출되어야 할 예산중에서 실험실습비가 대개 가장 많이 차지한다. 그렇지만, 경찰대학원이 인문사회계열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개의 대학원에서는 실험실습비가 거의 배정되지 않고 있으며, 지출도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 직접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실험실습이 매우 중요한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배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외에 교육과정 운영 경비로는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특강 경비, 전공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장 답사 경비, 학과별 세미나 경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경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실험실습비 : 31,000원 × 60명 = 1,860,000원
- 현장답사경비 : 2개 학과 × 2회 × 60명 × 2만원=4,800,000원
- 컴퓨터실습비 : 30,000원 × 60명 = 1,800,000원
- 학과별 세미나 경비 : 2개 학과 × 2회 × 1,000,000원 = 4,000,000원

<표 35> K 대학교의 1인당 실습비 배정액

계열구분	학과실습비	공동실습비	계
인문사회계	21,400	9,600	31,000
이학체육계	146,100	23,900	170,000
공학예능계	156,400	28,600	185,000

### 3. 수입과 지출 총계

이상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입에서 논문심사비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였고, 지출에서는 시설 및 설비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였다.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비용이 연간 단위로 편성되지 않고, 추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개의 경우 시설은 학부 과정과 공유하기 때문에 대학원의 별도 예산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이 표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매년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성되는 인력을 고려한다면 결코 많은 비용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교원의 연구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경찰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고용한다면 이러한 예산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6> 경찰대학원 운영 예산 예시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등록금	24,360,300	강사료	22,464,000
		실험실습비	1,860,000
		현장답사경비	4,800,000
		컴퓨터실습비	1,800,000
		학과별 세미나 경비	4,000,000
합 계	24,360,300		34,924,000

## 제7장 경찰대학원 설립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조사

### 1. 표집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찰대학원 설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부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설문대상자는 경찰청 산하 3개 학교에 9월 중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및 연수생, 일반 대학교의 경찰학 관련 전공에 수학과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설문 참여자는 총 867명이었으며, 성별로 볼 때, 남자는 727명, 여자는 140명이었다.

<표 37> 설문대상자의 직위별 학력 분포

계 급 \ 학 력	고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원졸이상	전체
순 경	23	99		122
경 장	2	7		9
경 사	65	71	1	137
경 위	42	33		75
경 감	1	3	1	5
경 정	3	14	3	20
총 경	3	8	10	21
간부후보생	8	45		53
경찰대생	170	1	1	172
교육생(순경)	32	117	2	151
일반대 행정학과		14	19	33
전 체	349	412	37	798

계급별로 보면, 경장과 경감이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그 외 계급은 적절하게 표집되었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하 349명, 대졸이하 412명, 대학원졸 이상 37명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학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과 계급을 모두 고려하고 보면, 순경으로 채용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응답자 중 대졸자의 비율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최근 채용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시자가 많고, 또 합격률도 높은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계급이 올라갈수록 학력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설문대상자의 근무지역별 분포에서 광주, 대전 지역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38> 설문 대상자의 근무지역별 분포

	빈 도	%
서 울	176	20.3
부 산	30	3.5
광 주	2	.2
대 구	32	3.7
대 전	3	.3
인 천	54	6.2
경 기 도	255	29.3
경상북도	23	2.6
경상남도	35	4.0
전라북도	25	2.9
전라남도	29	3.3
충청북도	18	2.1
충청남도	26	3.0
제 주 도	6	.7
강 원 도	19	2.2
기 타	33	3.8
무 응 답	103	11.9
합 계	869	100.0

## 2. 설문구성 내용

‘경찰대학원 설립에 관한 의견 조사서’는 경찰과 일반대학원에서 경찰관련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경찰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위해 작성되었다. 이 설문지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으며,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설문지에는 일반적 배경, 설립필요성에 관한 내용, 기타 고려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설립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39> 설문지 내용

항 목	내 용	문항번호
일반적 배경	· 개인배경(직위, 연령, 최종학력, 근무지역)	I.
	· 성별	II-1
	· 근무경력	II-2
	· 경찰 관련 대학원 졸업 여부	II-4
설립필요성	· 경찰대학원 설립 필요성	II-3
	· 경찰대학원 진학 이유	II-5
	· 경찰대학원 설립 필요성	III-1 ~ 18
	· 경찰의 대학원 학위과정 현황과 문제점	IV-19~ 33
	· 경찰대학원 설립시 고려사항	V-34 ~ 42
기 타	· 설립방법	43
	· 교과 운영 방법	44
	· 학비지원	45

## 3. 문항별 분석 내용

### 가. 경찰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

경찰대학원의 설립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질문하기에 앞서, 이 대학원의 설립에 대한 의견을 단도직입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확인한 결과, 직

급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필요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과 부정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온 반면, 경정 이하의 경우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고, 경정과 총경,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비 경찰관으로 분류되는 교육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과 부정이 섞인 반응은 학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렇지만, 경찰 관련 대학원 학위를 가졌을 경우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표 40> 경찰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직급별 반응 분포

직 위	매우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13	47	47	21	2
	10.0%	36.2%	36.2%	16.2%	1.5%
경사, 경위, 경감	18	86	55	40	21
	8.2%	39.1%	25.0%	18.2%	9.5%
경정, 총경	2	4	11	13	11
	4.9%	9.8%	26.8%	31.7%	26.8%
교육생(순경) 간부후보생, 경찰대생	22	92	130	94	39
	5.8%	24.4%	34.5%	24.9%	10.3%
일반대학원	13	8	6	4	2
	39.4%	24.2%	18.2%	12.1%	6.1%
전 체	68	237	249	172	75
	8.5%	29.6%	31.1%	21.5%	9.4%

<표 41> 경찰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학력별 반응 분포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23	97	115	84	35
	6.5%	27.4%	32.5%	23.7%	9.9%
대졸이하	39	136	129	87	38
	9.1%	31.7%	30.1%	20.3%	8.9%
대학원졸이상	6	8	10	8	5
	16.2%	21.6%	27.0%	21.6%	13.5%
전체	68	241	254	179	78
	8.3%	29.4%	31.0%	21.8%	9.5%

&lt;표 42&gt; 경찰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경찰관련 전공 학위 유무에 따른 반응 분포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예	18 12.9%	21 15.1%	48 34.5%	40 28.8%	12 8.6%
아니오	53 7.5%	223 31.7%	204 29.0%	149 21.2%	74 10.5%
기 타		2 33.3%	3 50.0%		1 16.7%
전 체	71 8.4%	246 29.0%	255 30.1%	189 22.3%	87 10.3%

#### 나. 경찰대학원 설립 필요성 세부 내용별 반응

경찰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항목별 반응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의 표로 정리되었다. 각 항목에 대한 계급별, 최종학위별 분석 결과는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항목별로 볼 때 특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경찰대학원 설립 필요성의 하위 영역별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특히, 경찰교육의 전문화, 치안전문가, 국제적인 교류, 학비 저렴, 업무능력 향상 등에서 매우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학력과 계급과 관계없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체적으로 대학원 학위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다. 이러한 반응을 계급별로 보면, 경정과 총경, 예비경찰(교육생, 간부후보생, 경찰대생) 등이 긍정적이었던 반면, 순경, 경장의 반응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학위별로 보면 고졸과 대졸 이하는 긍정적인 반면, 대학원졸업 이상은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였다.

셋째, 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시간 확보가 용이할 것이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다. 경찰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 학업과 업무와 충돌 하였을 때 업무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원을 경험해 보지 않은 집단이 경험해 본 집단에 비해 더 부정적이었다.

&lt;표 43&gt; 경찰대학원 설립 필요성 항목별 반응 요약(단위 %)

경찰대학원 설립 필요성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경찰 자체적으로 대학원 학위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8.5	29.6	31.1	21.5	9.4
2. 대학원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4.4	10.6	14.8	39.4	30.9
3. 경찰업무 수행에 대학원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8.5	29.6	31.1	21.5	9.4
4. 범죄의 지능화에 따라 경찰 교육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3.0	2.1	8.3	48.1	38.4
5. 경찰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대학원이 필요하다	6.8	10.6	14.2	37.2	31.1
6. 경찰도 사회의 다른 영역처럼 고학력, 전문화에 맞춰나가야 한다.	3.5	4.6	12.6	46.8	32.5
7. 경찰대학원을 통해서 폭넓은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6	10.8	21.0	40.9	20.7
8. 치안정책, 수사기법 등에 있어서 국제적인 학술 교류가 필요하다.	2.5	2.0	9.6	47.2	38.8
9. 학문적 지식과 실무가 겸비된 치안 전문가가 필요하다.	2.5	1.4	9.2	47.5	39.5
10. 경찰대학원은 경찰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6.6	10.1	23.5	37.9	21.9
11. 전문적 영역별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3.5	9.1	21.8	43.0	22.7
12. 경찰 실무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4.0	11.9	24.5	39.4	20.3
13. 기존 대학원보다 저렴하게 대학원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4.0	7.1	25.8	41.4	21.7
14. 조직, 상관 등의 대학원 진학 관련 지원을 받기가 용이할 것이다.	9.1	18.8	28.4	31.7	12.1
15. 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시간 확보가 용이할 것이다.	14.1	26.0	26.0	24.5	9.5
16. 경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4.1	7.6	27.3	40.0	20.9
17. 경찰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4.6	8.1	24.5	42.7	20.1
18. 경찰의 교육, 인사관리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9.7	17.0	33.8	27.2	12.3

#### 다. 경찰의 대학원 학위 과정 현황과 문제점

다음의 표는 경찰 관련 기존 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항목별 반응을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44> 경찰의 대학원 학위 과정 현황과 문제점 항목별 반응 요약(단위 %)**

경찰의 대학원 학위 과정 현황과 문제점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경찰관을 위해 학위과정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11.1	52.9	29.0	5.4	1.6
20. 석사 이상의 전문가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9.8	52.7	28.0	7.0	2.5
21. 석사 학위 소지자는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11.3	43.6	32.9	10.4	1.9
22. 기존의 경찰 관련 대학원에서는 경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과목들이 충분히 개설되어 있다.	9.3	46.9	36.0	5.4	2.4
23. 기존의 대학원은 교과과정에 있어 체계성이 부족하다	3.8	13.7	40.5	35.6	6.5
24. 경찰조직은 경찰대학원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다.	11.4	41.2	36.1	9.0	2.3
25. 현재 대학원을 수학할 교육 기회 및 교육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23.5	48.1	21.6	4.8	2.0
26. 경찰 조직은 정책적으로 대학원 이수를 권장하고 있다.	14.6	49.0	28.1	6.8	1.5
27. 일반 대학의 대학원 과정은 수업료가 과다하다.	2.8	8.9	24.3	44.0	20.0
28. 근처에 경찰 관련 전공을 개설한 대학원이 충분하다.	16.6	52.7	20.8	6.5	3.4
29. 현재 일반 대학원에는 실제 경찰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개설되어 있다.	10.6	48.9	32.5	5.5	2.4
30. 일반 대학원에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교수가 충분하다.	17.1	47.4	26.4	6.5	2.5
31. 현재 경찰에서는 석사학위 취득에 대하여 인센티브(학위수당, 승진 점수 등)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16.2	42.8	33.4	6.1	1.5
32. 기존 일반 대학원에서는 최신의 수사기법, 경찰행정 등에 대한 학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3.3	48.3	31.5	4.9	2.0
33. 경찰 또는 치안 문제와 관련하여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0.3	44.8	34.2	7.2	3.5

첫째, 기존 대학원에 수학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즉, 현재 대학원을 다니는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다닐만한 학위과정의 부족, 학위과정의 효과 미흡, 업무수행과 관련 불충분, 경찰의 동기유발 부족, 경찰업무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음, 학술교류 미흡, 학술연구 미흡 등이 확인되었다.

둘째, 계급별로 볼 때 위의 부정적인 반응을 경찰 내부적으로는 일치하였으나, 외부

행정대학원에 수학 중인 학생들과는 정반대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대학원 재학생들의 자기 방어적 반응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 경찰의 구성원들이 일반대학원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셋째, 경찰 내부 및 외부가 모두 동의한 문항으로는 수학에 필요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 수업료 과다, 인센티브의 부족 등이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대학원 수학의 동기유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며, 현재 대학원 이상 학위 소지자가 매우 적은 것의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 다. 경찰대학원 설립 시 고려사항

경찰대학원 설립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들에 대한 항목별 반응을 요약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인센티브 강화, 대학원 정보 제공, 대학원 제도 확대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계급과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중에서도 대학원제도의 확대는 일반대학원 재학생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실제 경험한 결과가 매우 긍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둘째, 학비 보조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반면, 일반대학원생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이것은 대학원 수학에 있어서 학비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는 측면을 짐작케 한다.

셋째, 일반인 입학에 대하여서는 순경, 경장이 일반대학원생과 견해를 같이하여 의견이 엇갈리게 반응한 반면, 그 외의 계급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이 반응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입학자격에 대해서 계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상이 가능하듯이 순경과 경장, 경사, 경위, 경감에서 부정적, 일반대학원생도 부정적이었다. 또한, 5년 이상의 경력에 대해서는 일반대학원생만 부정적인 반면, 전 계급이 긍정적이었고, 공개경쟁시험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찬성하였다. 이러한 반응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공개경쟁 시험을 위주로 가되, 일부분만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lt;표 45&gt; 경찰의 대학원 설립 시 고려사항 항목별 반응 요약(단위 %)

경찰대학원 설립 시 고려사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4. 학위 취득에 대해 인센티브(학위수당, 승진 점수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7.0	12.8	24.9	42.9	12.4
35. 대학원 학비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	3.9	6.3	15.6	49.1	25.2
36. 대학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2.1	4.0	11.8	54.5	27.6
37. 학위취득을 위한 대학원 파견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2.4	6.7	19.4	44.8	26.8
38. 경찰대학원에 일반인의 입학도 허용한다.	9.3	21.4	22.4	34.1	12.8
39. 기존의 경찰연수과정은 최신의 수사기법이나 범죄 동향 등에 대해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6.3	35.7	43.7	10.7	3.6
40. 입학생의 일정비율은 일정계급 이상(경감)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25.9	32.7	21.2	17.5	2.8
41. 입학생의 일정비율은 계급에 관계없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4.0	7.6	15.9	43.1	29.4
42. 대학원생 선발은 현장 경험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9.0	16.8	22.2	38.9	13.1

## 라. 기타 고려 사항

### (1) 설립 방법

경찰대학원의 설립 방법에 대한 의견에는 경찰 내부 대상자의 경우 경찰청 산하에 독립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많았으나, 일반대학원 생은 일반대학원에 설립 의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으로 총경과 경정의 경우 경찰대학 내에 추가로 설립하는 것을 가장 지지하였다.

&lt;표 46&gt; 경찰대학원을 설립한다면 어느 방법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경찰대학 내에 추가로 설립	일반대학교에 경찰대학원 설립의뢰	경찰청산하에 독립대학원 설립
순경, 경장	10	26	93
	7.8%	20.2%	72.1%
경사, 경위, 경감	46	49	114
	22.0%	23.4%	54.5%
경정, 총경	29	8	2
	74.4%	20.5%	5.1%
예비경찰	118	49	208
	31.5%	13.1%	55.5%
일반대학원	5	23	4
	15.6%	71.9%	12.5%
전체	208	155	421
	26.5%	19.8%	53.7%

## (2) 교과과정 운영

경찰대학원의 교과과정 운영은 일반대학원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대상자의 학력, 계급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였다. 따라서, 경찰대학원의 설립은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 기존의 학위과정과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lt;표 47&gt; 경찰대학원을 설립한다면 교과과정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일반 대학원과 동일하게 운영(2년제, 주간 수업, 방학 있음, 논문작성)	1년제의 집중 과정(주간수업, 방학 없음, 매일 수업으로 운영)	전문 대학원과 동일하게 운영(2.5년제, 야간수업, 방학 있음)
순경, 경장	44	22	62
	34.4%	17.2%	48.4%
경사, 경위, 경감	72	39	101
	34.0%	18.4%	47.6%
경정, 총경	13	6	18
	35.1%	16.2%	48.6%
예비경찰	212	57	107
	56.4%	15.2%	28.5%
일반대학원	22		8
	73.3%		26.7%
전체	363	124	296
	46.4%	15.8%	37.8%

### (3) 학비 지원

앞서 문항에서 기존의 대학원을 다니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학비 과다를 들었고 경찰대학원의 설립 이점으로는 학비 절감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 문항에 대한 반응은 일부 보조와 전액 부담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일반대학원생과 예비경찰은 일부 보조를 지지한 반면, 그 외의 계급에서는 전액 보조 쪽에 더 선호를 보였다. 경찰대학원을 설립할 경우, 전액 부담보다는 일부 보조와 수혜자 부담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경찰대학원 학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전액 자비	정부에서 일부 비용(훈련비를 보조)	전액 정부에서 부담(훈련비)
순경, 경장		48	81
		37.2%	62.8%
경사, 경위, 경감	19	89	105
	8.9%	41.8%	49.3%
경정, 총경	2	23	15
	5.0%	57.5%	37.5%
예비경찰	26	210	140
	6.9%	55.9%	37.2%
일반대학원	8	21	2
	25.8%	67.7%	6.5%
전 체	55	391	343
	7.0%	49.6%	43.5%

## 3. 설문 결과 요약

이상의 설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일반대학원에 대해서는 학비과다, 시간부족, 현장과의 연계부족 등의 측

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경찰대학원을 설립할 때에는 인센티브, 대학원제도 등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반면, 입학자격, 등록금 지원 등에 있어서 계급과 배경변인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보여 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다.

마지막으로, 경찰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같은 형태로 독립대학원 또는 경찰대학에 함께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제8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대학원 설립의 필요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립 기준, 이 기준에 비취본 현재의 여건, 대학원을 설립하려면 개정해야 할 법령,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리적 및 실증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인적 구성 및 양성체제, 대학원 설립 관련 법령, 경찰대학 관련 법령, 경찰 관련 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대학원의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등을 분석하였고, 경찰공무원과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대학원의 설립은 정보화, 국제화 사회로의 이행과 범죄의 지능화 및 경찰 관련 국제교류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전문인력이 필요한 시대적 요청이 확인된 반면, 현재 경찰에는 이러한 인력이 부족하며,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양성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현장과 유리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자체교육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부실 등을 확인함으로써 경찰 자체적인 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대학원 설립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등을 통해 대학원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찰대학원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석·박사학위과정이 모두 개설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경찰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경찰대학의 여건을 확인한 결과 시설은 현재 대학의 정원을 고려해도 여유분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교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찰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설치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적 규정, 구체적으로 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설치 과정 제시, 입학자격

규정, 교명 변경 및 직제 규정, 교원의 신분 변경 등에 대한 조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경찰대학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모두 개설하되 전문대학원의 형태로 하고, 매년 30명씩 매학기 15명 단위로 선발하되, 현직경찰 공무원을 우대하는 선발방식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원에 설치될 전공과정은 일반적이기보다 세부적인 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경찰대학원의 예산은 연간 1,000여 만원 이상이 추가로 요청되는데, 이는 기존의 교원의 연구지원과 연구소의 연구지원 등을 통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경찰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내부 구성원은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존의 일반대학교의 대학원 교육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설립되더라도 선발방식과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참고문헌

- 경찰대학(2002). 제 6기 경찰고위정책과정 교육계획서.
- 곽대경(2002). 한국수사경찰의 교육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5, 9-36.
- 김충남(2004). 경찰대학 운영체제의 재정립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165-204
- 이상원(1994). 경찰교육훈련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 187-209.
- 정진환(1996). 한국 경찰 교육훈련 제도에 관한 연구.
- 최선우(2000). 신임경찰간부 선발 및 교육훈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9, 345-384.
- 최응렬(1998). 경찰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10, 407-442.
- 최응렬(2001). 경찰 관련학과와 경찰대학의 발전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 285-311.
- 최응렬(2002). 경찰행정학 전공자의 활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5, 191-212.
- 최종술(2002). 경찰 고위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0(2). 77-107.
- 통계청(2004).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 허경미(2002). 경찰 중간관리자 교육체제의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4, 199-224.

< 부 록 1 >

경찰대학원(가칭) 설립에 관한 의견 조사서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경쟁력이 지식의 소유 여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식과 관련된 활동이 사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에 따라 교육은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식의 전달과 기억이 중심이 되었던 교육에서, 필요에 따라 적합한 지식을 찾아내는 능력 육성을 중요시 하게 되었고, 더불어 산업사회에서 중심이 되었던 자본과는 달리, 지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은 대학에서 종료되지 않고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학습과 더불어 대학원 수준의 학습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경찰대학원(가칭)은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치안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찰학·범죄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찰대학원(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객관적인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으로 인하여 귀하께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격무에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모든 문항에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대한민국 경찰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신다는 생각으로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9월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인우 교수

◎ 각 항목별로 알맞은 것을 골라 V표를 하거나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I. 귀하의 개인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위(계급)	연령	최종학력(전공)	근무지역(시/도)

II. 해당되는 사항에 V표하여 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2. 근무 경력 : ① 3년 미만    ② 3년 ~ 6년 미만    ③ 6년 ~ 9년 미만    ④ 9년 이상
3. 「경찰대학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4. 경찰관련 대학원 전공(경찰행정, 경찰학 등)을 다니거나 졸업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5. 경찰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진급    ② 연봉    ③ 평생교육차원    ④ 자아발전    ⑤ 업무상 필요    ⑥ 진학할 생각 없다

Ⅲ. ‘경찰대학원이 설립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경찰대학원 설립 필요성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경찰 자체적으로 대학원 학위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대학원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찰업무 수행에 대학원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범죄의 지능화에 따라 경찰 교육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경찰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대학원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경찰도 사회의 다른 영역처럼 고학력, 전문화에 맞춰나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경찰대학원을 통해서 폭넓은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치안정책, 수사기법 등에 있어서 국제적인 학술 교류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9. 학문적 지식과 실무가 겸비된 치안 전문가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경찰대학원은 경찰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전문적 영역별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경찰 실무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기존 대학원보다 저렴하게 대학원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조직, 상관 등의 대학원 진학 관련 지원을 받기가 용이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시간 확보가 용이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경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경찰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경찰의 교육, 인사관리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경찰의 대학원 학위 과정 현황과 문제점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9. 경찰관을 위해 학위과정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석사 이상의 전문가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석사 학위 소지자는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기존의 경찰 관련 대학원에서는 경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과 목들이 충분히 개설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기존의 대학원은 교과과정에 있어 체계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경찰조직은 경찰대학원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현재 대학원을 수학할 교육 기회 및 교육시간을 충분히 보장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경찰 조직은 정책적으로 대학원 이수를 권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일반 대학의 대학원 과정은 수업료가 과다하다.	①	②	③	④	⑤
28. 근처에 경찰 관련 전공을 개설한 대학원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9. 현재 일반 대학원에는 실제 경찰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개설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일반 대학원에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교수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1. 현재 경찰에서는 석사학위 취득에 대하여 인센티브(학위수당, 승진 점수 등)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기존 일반 대학원에서는 최신의 수사기법, 경찰행정 등에 대한 학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경찰 또는 치안 문제와 관련하여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V. 아래의 문항은 ‘기존 대학원의 경찰관련 학위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경찰대학원 설립 시 고려사항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34. 학위 취득에 대해 인센티브(학위수당, 승진 점수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대학원 학비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대학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학위취득을 위한 대학원 과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경찰대학원에 일반인의 입학도 허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기존의 경찰연수과정은 최신의 수사기법이나 범죄 동향 등에 대해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0. 입학생의 일정비율은 일정계급 이상(경감)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입학생의 일정비율은 계급에 관계없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42. 대학원생 선발은 현장 경험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V. 아래의 문항은 ‘경찰대학원을 설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43. 경찰대학원을 설립한다면 어느 방법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 ① 경찰대학 내에 추가로 설립
- ② 일반 대학교에 경찰대학원 설립 의뢰

③ 경찰청 산하에 독립 대학원 설립

44. 경찰대학원을 설립한다면 교과과정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① 일반 대학원과 동일하게 운영(2년제, 주간 수업, 방학 있음, 논문 작성)

② 1년제의 집중 과정(주간수업, 방학 없음, 매일 수업)으로 운영한다.

③ 전문 대학원과 동일하게 운영(2.5년제, 야간수업, 방학 있음)

45. 경찰대학원 학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① 전액 자비로 한다.

② 정부에서 일부 비용(훈련비)을 보조한다.

③ 전액 정부에서 부담(훈련비)한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 록 2 >

경찰대학원 설립에 대한 계급별 반응 분석 결과

<표 1> 경찰 자체적으로 대학원 학위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순경,경장	13	47	47	21	2
	10.0%	36.2%	36.2%	16.2%	1.5%
경사, 경위, 경감	18	86	55	40	21
	8.2%	39.1%	25.0%	18.2%	9.5%
경정, 총경	2	4	11	13	11
	4.9%	9.8%	26.8%	31.7%	26.8%
예비경찰	22	92	130	94	39
	5.8%	24.4%	34.5%	24.9%	10.3%
일반대학원	13	8	6	4	2
	39.4%	24.2%	18.2%	12.1%	6.1%
전 체	68	237	249	172	75
	8.5%	29.6%	31.1%	21.5%	9.4%

<표 2> 대학원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5	17	27	53	28
	3.8%	13.1%	20.8%	40.8%	21.5%
경사, 경위, 경감	11	33	33	92	53
	5.0%	14.9%	14.9%	41.4%	23.9%
경정, 총경		1	4	21	15
		2.4%	9.8%	51.2%	36.6%
예비경찰	7	34	50	138	148
	1.9%	9.0%	13.3%	36.6%	39.3%
일반대학원	12		5	12	4
	36.4%		15.2%	36.4%	12.1%
전 체	35	85	119	316	248
	4.4%	10.6%	14.8%	39.4%	30.9%

&lt;표 3&gt; 경찰업무 수행에 대학원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13	47	47	21	2
	10.0%	36.2%	36.2%	16.2%	1.5%
경사, 경위, 경감	18	86	55	40	21
	8.2%	39.1%	25.0%	18.2%	9.5%
경정, 총경	2	4	11	13	11
	4.9%	9.8%	26.8%	31.7%	26.8%
예비경찰	22	92	130	94	39
	5.8%	24.4%	34.5%	24.9%	10.3%
일반대학원	13	8	6	4	2
	39.4%	24.2%	18.2%	12.1%	6.1%
전 체	68	237	249	172	75
	8.5%	29.6%	31.1%	21.5%	9.4%

&lt;표 4&gt; 범죄의 지능화에 따라 경찰 교육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2	1	11	71	43
	1.6%	.8%	8.6%	55.5%	33.6%
경사, 경위, 경감	3	8	18	109	78
	1.4%	3.7%	8.3%	50.5%	36.1%
경정, 총경			1	18	22
			2.4%	43.9%	53.7%
예비경찰	7	7	34	171	155
	1.9%	1.9%	9.1%	45.7%	41.4%
일반대학원	12	1	2	12	6
	36.4%	3.0%	6.1%	36.4%	18.2%
전 체	24	17	66	381	304
	3.0%	2.1%	8.3%	48.1%	38.4%

<표 5> 경찰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대학원이 필요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6	10	27	64	23
	4.6%	7.7%	20.8%	49.2%	17.7%
경사, 경위, 경감	16	32	30	81	63
	7.2%	14.4%	13.5%	36.5%	28.4%
경정, 총경		2	5	17	17
		4.9%	12.2%	41.5%	41.5%
예비경찰	13	35	50	135	144
	3.4%	9.3%	13.3%	35.8%	38.2%
일반대학원	20	6	2	2	3
	60.6%	18.2%	6.1%	6.1%	9.1%
전 체	55	85	114	299	250
	6.8%	10.6%	14.2%	37.2%	31.1%

<표 6> 경찰도 사회의 다른 영역처럼 고학력, 전문화에 맞춰나아가야 한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1	2	19	78	30
	.8%	1.5%	14.6%	60.0%	23.1%
경사, 경위, 경감	10	20	31	103	58
	4.5%	9.0%	14.0%	46.4%	26.1%
경정, 총경		1	3	20	17
		2.4%	7.3%	48.8%	41.5%
예비경찰	5	11	46	166	148
	1.3%	2.9%	12.2%	44.1%	39.4%
일반대학원	12	3	2	8	8
	36.4%	9.1%	6.1%	24.2%	24.2%
전 체	28	37	101	375	261
	3.5%	4.6%	12.6%	46.8%	32.5%

<표 7> 경찰대학원을 통해서 폭넓은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8	16	40	52	14
	6.2%	12.3%	30.8%	40.0%	10.8%
경사, 경위, 경감	16	31	39	95	42
	7.2%	13.9%	17.5%	42.6%	18.8%
경정, 총경		2	4	20	15
		4.9%	9.8%	48.8%	36.6%
예비경찰	14	31	85	158	90
	3.7%	8.2%	22.5%	41.8%	23.8%
일반대학원	15	7	1	4	6
	45.5%	21.2%	3.0%	12.1%	18.2%
전 체	53	87	169	329	167
	6.6%	10.8%	21.0%	40.9%	20.7%

<표 8> 치안정책, 수사기법 등에 있어서 국제적인 학술 교류가 필요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2	10	78	40
		1.5%	7.7%	60.0%	30.8%
경사, 경위, 경감	5	5	30	108	75
	2.2%	2.2%	13.5%	48.4%	33.6%
경정, 총경				19	22
				46.3%	53.7%
예비경찰	4	9	32	167	166
	1.1%	2.4%	8.5%	44.2%	43.9%
일반대학원	11		5	8	9
	33.3%		15.2%	24.2%	27.3%
전 체	20	16	77	380	312
	2.5%	2.0%	9.6%	47.2%	38.8%

<표 9> 학문적 지식과 실무가 겸비된 치안 전문가가 필요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1	1	8	72	48
	.8%	.8%	6.2%	55.4%	36.9%
경사, 경위, 경감	5	5	23	122	68
	2.2%	2.2%	10.3%	54.7%	30.5%
경정, 총경			1	22	18
			2.4%	53.7%	43.9%
예비경찰	3	5	36	158	176
	.8%	1.3%	9.5%	41.8%	46.6%
일반대학원	11		6	8	8
	33.3%		18.2%	24.2%	24.2%
전체	20	11	74	382	318
	2.5%	1.4%	9.2%	47.5%	39.5%

<표 10> 경찰대학원은 경찰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6	17	52	47	9
	4.6%	13.0%	39.7%	35.9%	6.9%
경사, 경위, 경감	12	26	53	89	44
	5.4%	11.6%	23.7%	39.7%	19.6%
경정, 총경	1	2	1	17	20
	2.4%	4.9%	2.4%	41.5%	48.8%
예비경찰	18	30	81	149	98
	4.8%	8.0%	21.5%	39.6%	26.1%
일반대학원	16	6	2	2	5
	51.6%	19.4%	6.5%	6.5%	16.1%
전체	53	81	189	304	176
	6.6%	10.1%	23.5%	37.9%	21.9%

<표 11> 전문적 영역별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2	19	41	56	13
	1.5%	14.5%	31.3%	42.7%	9.9%
경사, 경위, 경감	7	23	47	101	46
	3.1%	10.3%	21.0%	45.1%	20.5%
경정, 총경		1	4	20	16
		2.4%	9.8%	48.8%	39.0%
예비경찰	5	26	77	165	103
	1.3%	6.9%	20.5%	43.9%	27.4%
일반대학원	14	4	6	3	4
	45.2%	12.9%	19.4%	9.7%	12.9%
전체	28	73	175	345	182
	3.5%	9.1%	21.8%	43.0%	22.7%

<표 12> 경찰 실무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3	23	40	54	10
	2.3%	17.7%	30.8%	41.5%	7.7%
경사, 경위, 경감	9	26	54	92	42
	4.0%	11.7%	24.2%	41.3%	18.8%
경정, 총경	1	1	4	21	14
	2.4%	2.4%	9.8%	51.2%	34.1%
예비경찰	5	41	92	144	93
	1.3%	10.9%	24.5%	38.4%	24.8%
일반대학원	14	4	6	4	3
	45.2%	12.9%	19.4%	12.9%	9.7%
전체	32	95	196	315	162
	4.0%	11.9%	24.5%	39.4%	20.3%

<표 13> 기존 대학원보다 저렴하게 대학원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3	6	40	61	21
	2.3%	4.6%	30.5%	46.6%	16.0%
경사, 경위, 경감	9	18	44	109	44
	4.0%	8.0%	19.6%	48.7%	19.6%
경정, 총경			6	19	16
			14.6%	46.3%	39.0%
예비경찰	9	27	112	139	89
	2.4%	7.2%	29.8%	37.0%	23.7%
일반대학원	11	6	5	4	4
	36.7%	20.0%	16.7%	13.3%	13.3%
전 체	32	57	207	332	174
	4.0%	7.1%	25.8%	41.4%	21.7%

<표 14> 조직, 상관 등의 대학원 진학 관련 지원을 받기가 용이할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12	24	44	36	15
	9.2%	18.3%	33.6%	27.5%	11.5%
경사, 경위, 경감	21	56	61	69	17
	9.4%	25.0%	27.2%	30.8%	7.6%
경정, 총경	4	2	6	20	9
	9.8%	4.9%	14.6%	48.8%	22.0%
예비경찰	22	59	112	129	55
	5.8%	15.6%	29.7%	34.2%	14.6%
일반대학원	14	10	5	1	1
	45.2%	32.3%	16.1%	3.2%	3.2%
전체	73	151	228	255	97
	9.1%	18.8%	28.4%	31.7%	12.1%

&lt;표 15&gt; 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시간 확보가 용이할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21	44	31	26	8
	16.2%	33.8%	23.8%	20.0%	6.2%
경사, 경위, 경감	29	66	60	54	14
	13.0%	29.6%	26.9%	24.2%	6.3%
경정, 총경	4	7	9	13	8
	9.8%	17.1%	22.0%	31.7%	19.5%
예비경찰	44	80	105	101	46
	11.7%	21.3%	27.9%	26.9%	12.2%
일반대학원	15	11	3	2	
	48.4%	35.5%	9.7%	6.5%	
전 체	113	208	208	196	76
	14.1%	26.0%	26.0%	24.5%	9.5%

&lt;표 16&gt; 경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4	14	44	53	16
	3.1%	10.7%	33.6%	40.5%	12.2%
경사, 경위, 경감	7	21	58	100	36
	3.2%	9.5%	26.1%	45.0%	16.2%
경정, 총경		1	4	20	16
		2.4%	9.8%	48.8%	39.0%
예비경찰	8	21	105	144	96
	2.1%	5.6%	28.1%	38.5%	25.7%
일반대학원	14	4	7	2	3
	46.7%	13.3%	23.3%	6.7%	10.0%
전 체	33	61	218	319	167
	4.1%	7.6%	27.3%	40.0%	20.9%

<표 17> 경찰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3	11	45	60	12
	2.3%	8.4%	34.4%	45.8%	9.2%
경사, 경위, 경감	13	19	53	96	43
	5.8%	8.5%	23.7%	42.9%	19.2%
경정, 총경			6	22	13
			14.6%	53.7%	31.7%
예비경찰	7	30	90	158	92
	1.9%	8.0%	23.9%	41.9%	24.4%
일반대학원	14	5	3	7	2
	45.2%	16.1%	9.7%	22.6%	6.5%
전 체	37	65	197	343	162
	4.6%	8.1%	24.5%	42.7%	20.1%

<표 18> 경찰의 교육, 인사관리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16	25	49	33	8
	12.2%	19.1%	37.4%	25.2%	6.1%
경사, 경위, 경감	22	46	72	59	24
	9.9%	20.6%	32.3%	26.5%	10.8%
경정, 총경	2	2	11	16	10
	4.9%	4.9%	26.8%	39.0%	24.4%
예비경찰	22	55	135	109	55
	5.9%	14.6%	35.9%	29.0%	14.6%
일반대학원	16	8	4	1	2
	51.6%	25.8%	12.9%	3.2%	6.5%
전 체	78	136	271	218	99
	9.7%	17.0%	33.8%	27.2%	12.3%

<표 19> 경찰관을 위해 학위과정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20	81	27	2	
	15.4%	62.3%	20.8%	1.5%	
경사, 경위, 경감	29	106	62	22	4
	13.0%	47.5%	27.8%	9.9%	1.8%
경정, 총경	4	23	9	5	
	9.8%	56.1%	22.0%	12.2%	
예비경찰	33	210	127	7	1
	8.7%	55.6%	33.6%	1.9%	.3%
일반대학원	3	5	8	7	8
	9.7%	16.1%	25.8%	22.6%	25.8%
전 체	89	425	233	43	13
	11.1%	52.9%	29.0%	5.4%	1.6%

<표 20> 석사 이상의 전문가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순경,경장	17	81	26	5	1
	13.1%	62.3%	20.0%	3.8%	.8%
경사, 경위, 경감	20	118	59	21	5
	9.0%	52.9%	26.5%	9.4%	2.2%
경정, 총경	6	25	7	2	1
	14.6%	61.0%	17.1%	4.9%	2.4%
예비경찰	34	191	127	22	4
	9.0%	50.5%	33.6%	5.8%	1.1%
일반대학원	2	8	6	6	9
	6.5%	25.8%	19.4%	19.4%	29.0%
전 체	79	423	225	56	20
	9.8%	52.7%	28.0%	7.0%	2.5%

<표 21> 석사 학위 소지자는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19	68	40	2	
	14.7%	52.7%	31.0%	1.6%	
경사, 경위, 경감	32	106	61	19	4
	14.4%	47.7%	27.5%	8.6%	1.8%
경정, 총경	6	19	12	4	
	14.6%	46.3%	29.3%	9.8%	
예비경찰	30	148	145	50	3
	8.0%	39.4%	38.6%	13.3%	.8%
일반대학원	3	7	5	8	8
	9.7%	22.6%	16.1%	25.8%	25.8%
전 체	90	348	263	83	15
	11.3%	43.6%	32.9%	10.4%	1.9%

<표 22> 기존의 경찰 관련 대학원에서는 경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과목들이 충분히 개설되어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11	73	44	1	1
	8.5%	56.2%	33.8%	.8%	.8%
경사, 경위, 경감	18	97	86	16	5
	8.1%	43.7%	38.7%	7.2%	2.3%
경정, 총경	6	23	8	3	1
	14.6%	56.1%	19.5%	7.3%	2.4%
예비경찰	37	177	144	18	
	9.8%	47.1%	38.3%	4.8%	
일반대학원	2	5	6	5	12
	6.7%	16.7%	20.0%	16.7%	40.0%
전 체	74	375	288	43	19
	9.3%	46.9%	36.0%	5.4%	2.4%

&lt;표 23&gt; 기존의 대학원은 교과과정에 있어 체계성이 부족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5	18	49	49	9
	3.8%	13.8%	37.7%	37.7%	6.9%
경사, 경위, 경감	3	28	94	86	9
	1.4%	12.7%	42.7%	39.1%	4.1%
경정, 총경	2	8	7	18	5
	5.0%	20.0%	17.5%	45.0%	12.5%
예비경찰	9	50	168	126	24
	2.4%	13.3%	44.6%	33.4%	6.4%
일반대학원	11	5	4	4	5
	37.9%	17.2%	13.8%	13.8%	17.2%
전 체	30	109	322	283	52
	3.8%	13.7%	40.5%	35.6%	6.5%

&lt;표 24&gt; 경찰조직은 경찰대학원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17	72	33	5	1
	13.3%	56.3%	25.8%	3.9%	.8%
경사, 경위, 경감	25	96	78	19	4
	11.3%	43.2%	35.1%	8.6%	1.8%
경정, 총경	6	18	11	6	
	14.6%	43.9%	26.8%	14.6%	
예비경찰	40	127	157	39	4
	10.9%	34.6%	42.8%	10.6%	1.1%
일반대학원	2	12	6	2	9
	6.5%	38.7%	19.4%	6.5%	29.0%
전체	90	325	285	71	18
	11.4%	41.2%	36.1%	9.0%	2.3%

<표 25> 현재 대학원을 수학할 교육 기회 및 교육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46	60	23	1	
	35.4%	46.2%	17.7%	.8%	
경사, 경위, 경감	48	109	51	11	3
	21.6%	49.1%	23.0%	5.0%	1.4%
경정, 총경	10	22	5	3	1
	24.4%	53.7%	12.2%	7.3%	2.4%
예비경찰	82	182	87	21	3
	21.9%	48.5%	23.2%	5.6%	.8%
일반대학원	1	10	6	2	9
	3.6%	35.7%	21.4%	7.1%	32.1%
전 체	187	383	172	38	16
	23.5%	48.1%	21.6%	4.8%	2.0%

<표 26> 경찰 조직은 정책적으로 대학원 이수를 권장하고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24	70	32	3	1
	18.5%	53.8%	24.6%	2.3%	.8%
경사, 경위, 경감	46	118	43	12	2
	20.8%	53.4%	19.5%	5.4%	.9%
경정, 총경	7	26	5	3	
	17.1%	63.4%	12.2%	7.3%	
예비경찰	38	163	139	33	1
	10.2%	43.6%	37.2%	8.8%	.3%
일반대학원	1	13	5	3	8
	3.3%	43.3%	16.7%	10.0%	26.7%
전 체	116	390	224	54	12
	14.6%	49.0%	28.1%	6.8%	1.5%

&lt;표 27&gt; 일반 대학의 대학원 과정은 수업료가 과다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5	5	24	60	34
	3.9%	3.9%	18.8%	46.9%	26.6%
경사, 경위, 경감	7	26	47	109	31
	3.2%	11.8%	21.4%	49.5%	14.1%
경정, 총경		3	4	20	14
		7.3%	9.8%	48.8%	34.1%
예비경찰	6	33	109	151	76
	1.6%	8.8%	29.1%	40.3%	20.3%
일반대학원	4	4	9	9	4
	13.3%	13.3%	30.0%	30.0%	13.3%
전 체	22	71	193	349	159
	2.8%	8.9%	24.3%	44.0%	20.0%

&lt;표 28&gt; 근처에 경찰 관련 전공을 개설한 대학원이 충분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25	77	23	3	1
	19.4%	59.7%	17.8%	2.3%	.8%
경사, 경위, 경감	41	121	38	14	5
	18.7%	55.3%	17.4%	6.4%	2.3%
경정, 총경	6	30	3		1
	15.0%	75.0%	7.5%		2.5%
예비경찰	58	182	96	26	9
	15.6%	49.1%	25.9%	7.0%	2.4%
일반대학원	1	6	4	8	11
	3.3%	20.0%	13.3%	26.7%	36.7%
전 체	131	416	164	51	27
	16.6%	52.7%	20.8%	6.5%	3.4%

<표 29> 현재 일반 대학원에는 실제 경찰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개설되어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16	66	46	2	
	12.3%	50.8%	35.4%	1.5%	
경사, 경위, 경감	21	118	65	14	3
	9.5%	53.4%	29.4%	6.3%	1.4%
경정, 총경	5	17	15	3	1
	12.2%	41.5%	36.6%	7.3%	2.4%
예비경찰	43	184	130	17	3
	11.4%	48.8%	34.5%	4.5%	.8%
일반대학원		6	4	8	12
		20.0%	13.3%	26.7%	40.0%
전 체	85	391	260	44	19
	10.6%	48.9%	32.5%	5.5%	2.4%

<표 30> 일반 대학원에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교수가 충분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27	63	37	1	
	21.1%	49.2%	28.9%	.8%	
경사, 경위, 경감	35	108	55	20	4
	15.8%	48.6%	24.8%	9.0%	1.8%
경정, 총경	7	25	6	2	1
	17.1%	61.0%	14.6%	4.9%	2.4%
예비경찰	68	176	106	23	4
	18.0%	46.7%	28.1%	6.1%	1.1%
일반대학원		7	7	6	11
		22.6%	22.6%	19.4%	35.5%
전체	137	379	211	52	20
	17.1%	47.4%	26.4%	6.5%	2.5%

<표 31> 현재 경찰에서는 석사학위 취득에 대하여 인센티브(학위수당, 승진 점수 등)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27	68	32	2	
	20.9%	52.7%	24.8%	1.6%	
경사, 경위, 경감	45	101	57	17	3
	20.2%	45.3%	25.6%	7.6%	1.3%
경정, 총경	11	17	10	1	1
	27.5%	42.5%	25.0%	2.5%	2.5%
예비경찰	46	145	157	27	1
	12.2%	38.6%	41.8%	7.2%	.3%
일반대학원		10	10	2	7
		34.5%	34.5%	6.9%	24.1%
전 체	129	341	266	49	12
	16.2%	42.8%	33.4%	6.1%	1.5%

<표 32> 기존 일반 대학원에서는 최신의 수사기법, 경찰행정 등에 대한 학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19	72	37	1	
	14.7%	55.8%	28.7%	.8%	
경사, 경위, 경감	27	120	55	16	3
	12.2%	54.3%	24.9%	7.2%	1.4%
경정, 총경	11	21	7	1	1
	26.8%	51.2%	17.1%	2.4%	2.4%
예비경찰	48	166	145	15	3
	12.7%	44.0%	38.5%	4.0%	.8%
일반대학원	1	7	8	6	9
	3.2%	22.6%	25.8%	19.4%	29.0%
전 체	106	386	252	39	16
	13.3%	48.3%	31.5%	4.9%	2.0%

<표 33> 경찰 또는 치안 문제와 관련하여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 령 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15	73	37	4	1
	11.5%	56.2%	28.5%	3.1%	.8%
경사, 경위, 경감	27	101	73	18	4
	12.1%	45.3%	32.7%	8.1%	1.8%
경정, 총경	5	25	8	2	1
	12.2%	61.0%	19.5%	4.9%	2.4%
예비경찰	35	155	151	27	9
	9.3%	41.1%	40.1%	7.2%	2.4%
일반대학원	1	5	5	7	13
	3.2%	16.1%	16.1%	22.6%	41.9%
전 체	83	359	274	58	28
	10.3%	44.8%	34.2%	7.2%	3.5%

<표 34> 학위 취득에 대해 인센티브(학위수당) 승진 점수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9	10	29	61	20
	7.0%	7.8%	22.5%	47.3%	15.5%
경사, 경위, 경감	23	45	54	80	19
	10.4%	20.4%	24.4%	36.2%	8.6%
경정, 총경	1	5	9	20	5
	2.5%	12.5%	22.5%	50.0%	12.5%
예비경찰	22	36	96	176	47
	5.8%	9.5%	25.5%	46.7%	12.5%
일반대학원	1	6	11	6	8
	3.1%	18.8%	34.4%	18.8%	25.0%
전 체	56	102	199	343	99
	7.0%	12.8%	24.9%	42.9%	12.4%

&lt;표 35&gt; 대학원 학비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2	2	18	65	42
	1.6%	1.6%	14.0%	50.4%	32.6%
경사, 경위, 경감	15	18	27	113	46
	6.8%	8.2%	12.3%	51.6%	21.0%
경정, 총경		2	3	25	10
		5.0%	7.5%	62.5%	25.0%
예비경찰	8	23	67	183	96
	2.1%	6.1%	17.8%	48.5%	25.5%
일반대학원	6	5	9	5	7
	18.8%	15.6%	28.1%	15.6%	21.9%
전체	31	50	124	391	201
	3.9%	6.3%	15.6%	49.1%	25.2%

&lt;표 36&gt; 대학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1	1	14	71	43
	.8%	.8%	10.8%	54.6%	33.1%
경사, 경위, 경감	10	12	26	128	44
	4.5%	5.5%	11.8%	58.2%	20.0%
경정, 총경			1	27	12
			2.5%	67.5%	30.0%
예비경찰	2	15	48	199	114
	.5%	4.0%	12.7%	52.6%	30.2%
일반대학원	4	4	5	11	8
	12.5%	12.5%	15.6%	34.4%	25.0%
전체	17	32	94	436	221
	2.1%	4.0%	11.8%	54.5%	27.6%

<표 37> 학위취득을 위한 대학원 파견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1	6	25	64	34
	.8%	4.6%	19.2%	49.2%	26.2%
경사, 경위, 경감	11	17	39	110	42
	5.0%	7.8%	17.8%	50.2%	19.2%
경정, 총경	1		7	18	13
	2.6%		17.9%	46.2%	33.3%
예비경찰	4	24	77	158	113
	1.1%	6.4%	20.5%	42.0%	30.1%
일반대학원	2	6	6	6	11
	6.5%	19.4%	19.4%	19.4%	35.5%
전 체	19	53	154	356	213
	2.4%	6.7%	19.4%	44.8%	26.8%

<표 38> 경찰대학원에 일반인의 입학도 허용한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22	35	31	29	10
	17.3%	27.6%	24.4%	22.8%	7.9%
경사, 경위, 경감	14	39	50	90	21
	6.5%	18.2%	23.4%	42.1%	9.8%
경정, 총경	3	1	5	19	10
	7.9%	2.6%	13.2%	50.0%	26.3%
예비경찰	31	91	84	123	47
	8.2%	24.2%	22.3%	32.7%	12.5%
일반대학원	3	2	6	7	13
	9.7%	6.5%	19.4%	22.6%	41.9%
전 체	73	168	176	268	101
	9.3%	21.4%	22.4%	34.1%	12.8%

<표 39> 기존의 경찰연수과정은 최신의 수사기법이나 범죄 동향 등에 대해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13	54	53	6	2
	10.2%	42.2%	41.4%	4.7%	1.6%
경사, 경위, 경감	15	77	91	28	10
	6.8%	34.8%	41.2%	12.7%	4.5%
경정, 총경	3	14	15	7	1
	7.5%	35.0%	37.5%	17.5%	2.5%
예비경찰	17	123	181	42	13
	4.5%	32.7%	48.1%	11.2%	3.5%
일반대학원	2	16	8	2	3
	6.5%	51.6%	25.8%	6.5%	9.7%
전 체	50	284	348	85	29
	6.3%	35.7%	43.7%	10.7%	3.6%

<표 40> 입학생의 일정비율은 일정계급 이상(경감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 령 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41	51	26	11	1
	31.5%	39.2%	20.0%	8.5%	.8%
경사, 경위, 경감	61	94	32	27	6
	27.7%	42.7%	14.5%	12.3%	2.7%
경정, 총경	1	7	4	22	6
	2.5%	17.5%	10.0%	55.0%	15.0%
예비경찰	94	101	102	72	9
	24.9%	26.7%	27.0%	19.0%	2.4%
일반대학원	10	8	5	8	
	32.3%	25.8%	16.1%	25.8%	
전 체	207	261	169	140	22
	25.9%	32.7%	21.2%	17.5%	2.8%

<표 41> 입학생의 일정비율은 계급에 관계없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6	7	22	53	42
	4.6%	5.4%	16.9%	40.8%	32.3%
경사, 경위, 경감	10	25	29	106	50
	4.5%	11.4%	13.2%	48.2%	22.7%
경정, 총경	1	5	9	20	5
	2.5%	12.5%	22.5%	50.0%	12.5%
예비경찰	11	21	63	156	127
	2.9%	5.6%	16.7%	41.3%	33.6%
일반대학원	4	3	4	10	11
	12.5%	9.4%	12.5%	31.3%	34.4%
전 체	32	61	127	345	235
	4.0%	7.6%	15.9%	43.1%	29.4%

<표 42> 대학원생 선발은 현장 경험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순경,경장	10	27	26	50	17
	7.7%	20.8%	20.0%	38.5%	13.1%
경사, 경위, 경감	12	19	29	114	46
	5.5%	8.6%	13.2%	51.8%	20.9%
경정, 총경	3	6	3	18	10
	7.5%	15.0%	7.5%	45.0%	25.0%
예비경찰	38	72	111	125	31
	10.1%	19.1%	29.4%	33.2%	8.2%
일반대학원	9	10	8	4	1
	28.1%	31.3%	25.0%	12.5%	3.1%
전 체	72	134	177	311	105
	9.0%	16.8%	22.2%	38.9%	13.1%

&lt;표 43&gt; 경찰대학원을 설립한다면 어느 방법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경찰대학 내에 추가로 설립	일반대학교에 경찰대학원 설립의뢰	경찰청산하에 독립대학원 설립
순경,경장	10	26	93
	7.8%	20.2%	72.1%
경사, 경위, 경감	46	49	114
	22.0%	23.4%	54.5%
경정, 총경	29	8	2
	74.4%	20.5%	5.1%
예비경찰	118	49	208
	31.5%	13.1%	55.5%
일반대학원	5	23	4
	15.6%	71.9%	12.5%
전체	208	155	421
	26.5%	19.8%	53.7%

&lt;표 44&gt; 경찰대학원을 설립한다면 교과과정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일반 대학원과 동일하게 운영(2년제, 주간 수업, 방학 있음, 논문작성)	1년제의 집중 과정(주간수업, 방학 없음, 매일 수업으로 운영)	전문 대학원과 동일하게 운영(2.5년제, 야간수업, 방학 있음)
순경,경장	44	22	62
	34.4%	17.2%	48.4%
경사, 경위, 경감	72	39	101
	34.0%	18.4%	47.6%
경정, 총경	13	6	18
	35.1%	16.2%	48.6%
예비경찰	212	57	107
	56.4%	15.2%	28.5%
일반대학원	22		8
	73.3%		26.7%
전체	363	124	296
	46.4%	15.8%	37.8%

<표 45> 경찰대학원 학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전액 자비	정부에서 일부 비용(훈련비를 보조)	전액 정부에서 부담(훈련비)
순경, 경장		48	81
		37.2%	62.8%
경사, 경위, 경감	19	89	105
	8.9%	41.8%	49.3%
경정, 총경	2	23	15
	5.0%	57.5%	37.5%
예비경찰	26	210	140
	6.9%	55.9%	37.2%
일반대학원	8	21	2
	25.8%	67.7%	6.5%
전 체	55	391	343
	7.0%	49.6%	43.5%

## &lt; 부 록 3 &gt;

## 경찰대학원 설립에 대한 학력별 문항에 대한 반응 분석 결과

&lt;표 1&gt; 경찰 자체적으로 대학원 학위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22	40	59	152	82
	6.2%	11.3%	16.6%	42.8%	23.1%
대졸이하	44	67	76	151	94
	10.2%	15.5%	17.6%	35.0%	21.8%
대학원졸이상	12	5	1	10	8
	33.3%	13.9%	2.8%	27.8%	22.2%
전 체	78	112	136	313	184
	9.5%	13.6%	16.5%	38.0%	22.4%

&lt;표 2&gt; 대학원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12	31	44	142	124
	3.4%	8.8%	12.5%	40.2%	35.1%
대졸이하	19	55	70	167	122
	4.4%	12.7%	16.2%	38.6%	28.2%
대학원졸이상	4	1	5	17	10
	10.8%	2.7%	13.5%	45.9%	27.0%
전 체	35	87	119	326	256
	4.3%	10.6%	14.5%	39.6%	31.1%

<표 3> 경찰업무 수행에 대학원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23	97	115	84	35
	6.5%	27.4%	32.5%	23.7%	9.9%
대졸이하	39	136	129	87	38
	9.1%	31.7%	30.1%	20.3%	8.9%
대학원졸이상	6	8	10	8	5
	16.2%	21.6%	27.0%	21.6%	13.5%
전 체	68	241	254	179	78
	8.3%	29.4%	31.0%	21.8%	9.5%

<표 4> 범죄의 지능화에 따라 경찰 교육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7	9	24	170	137
	2.0%	2.6%	6.9%	49.0%	39.5%
대졸이하	13	6	39	202	166
	3.1%	1.4%	9.2%	47.4%	39.0%
대학원졸이상	4		1	17	15
	10.8%		2.7%	45.9%	40.5%
전 체	24	15	64	389	318
	3.0%	1.9%	7.9%	48.0%	39.3%

<표 5> 경찰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대학원이 필요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 령 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15	35	48	134	122
	4.2%	9.9%	13.6%	37.9%	34.5%
대졸이하	32	48	66	162	124
	7.4%	11.1%	15.3%	37.5%	28.7%
대학원졸이상	10	4	2	10	11
	27.0%	10.8%	5.4%	27.0%	29.7%
전 체	57	87	116	306	257
	6.9%	10.6%	14.1%	37.2%	31.2%

<표 6> 경찰도 사회의 다른 영역처럼 고학력, 전문화에 맞춰나아가야 한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 령 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12	16	43	163	118
	3.4%	4.5%	12.2%	46.3%	33.5%
대졸이하	12	15	57	212	137
	2.8%	3.5%	13.2%	49.0%	31.6%
대학원졸이상	4	3	3	13	14
	10.8%	8.1%	8.1%	35.1%	37.8%
전 체	28	34	103	388	269
	3.4%	4.1%	12.5%	47.2%	32.7%

<표 7> 경찰대학원을 통해서 폭넓은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21	29	67	154	84
	5.9%	8.2%	18.9%	43.4%	23.7%
대졸이하	26	55	105	172	75
	6.0%	12.7%	24.2%	39.7%	17.3%
대학원졸이상	7	4	2	12	12
	18.9%	10.8%	5.4%	32.4%	32.4%
전 체	54	88	174	338	171
	6.5%	10.7%	21.1%	41.0%	20.7%

<표 8> 치안정책, 수사기법 등에 있어서 국제적인 학술 교류가 필요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7	9	40	161	138
	2.0%	2.5%	11.3%	45.4%	38.9%
대졸이하	9	6	32	218	167
	2.1%	1.4%	7.4%	50.5%	38.7%
대학원졸이상	4		2	15	16
	10.8%		5.4%	40.5%	43.2%
전 체	20	15	74	394	321
	2.4%	1.8%	9.0%	47.8%	39.0%

<표 9> 학문적 지식과 실무가 겸비된 치안 전문가가 필요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7	7	35	164	142
	2.0%	2.0%	9.9%	46.2%	40.0%
대졸이하	9	3	36	211	174
	2.1%	.7%	8.3%	48.7%	40.2%
대학원졸이상	4		2	16	15
	10.8%		5.4%	43.2%	40.5%
전체	20	10	73	391	331
	2.4%	1.2%	8.8%	47.4%	40.1%

<표 10> 경찰대학원은 경찰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17	34	73	143	89
	4.8%	9.6%	20.5%	40.2%	25.0%
대졸이하	29	49	113	161	80
	6.7%	11.3%	26.2%	37.3%	18.5%
대학원졸이상	8	2	4	10	11
	22.9%	5.7%	11.4%	28.6%	31.4%
전 체	54	85	190	314	180
	6.6%	10.3%	23.1%	38.2%	21.9%

&lt;표 11&gt; 전문적 영역별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6	33	66	157	94
	1.7%	9.3%	18.5%	44.1%	26.4%
대졸이하	17	39	105	188	83
	3.9%	9.0%	24.3%	43.5%	19.2%
대학원졸이상	6	3	4	13	9
	17.1%	8.6%	11.4%	37.1%	25.7%
전체	29	75	175	358	186
	3.5%	9.1%	21.3%	43.5%	22.6%

&lt;표 12&gt; 경찰 실무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13	29	91	141	81
	3.7%	8.2%	25.6%	39.7%	22.8%
대졸이하	13	64	102	173	78
	3.0%	14.9%	23.7%	40.2%	18.1%
대학원졸이상	7	3	6	11	8
	20.0%	8.6%	17.1%	31.4%	22.9%
전체	33	96	199	325	167
	4.0%	11.7%	24.3%	39.6%	20.4%

&lt;표 13&gt; 기존 대학원보다 저렴하게 대학원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12	24	106	143	70
	3.4%	6.8%	29.9%	40.3%	19.7%
대졸이하	17	33	96	186	100
	3.9%	7.6%	22.2%	43.1%	23.1%
대학원졸이상	4	2	8	11	10
	11.4%	5.7%	22.9%	31.4%	28.6%
전체	33	59	210	340	180
	4.0%	7.2%	25.5%	41.4%	21.9%

<표 14> 조직, 상관 등의 대학원 진학 관련 지원을 받기가 용이할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24	65	104	116	47
	6.7%	18.3%	29.2%	32.6%	13.2%
대졸이하	43	86	118	137	49
	9.9%	19.9%	27.3%	31.6%	11.3%
대학원졸이상	7	6	7	9	6
	20.0%	17.1%	20.0%	25.7%	17.1%
전 체	74	157	229	262	102
	9.0%	19.1%	27.8%	31.8%	12.4%

<표 15> 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시간 확보가 용이할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35	78	104	97	40
	9.9%	22.0%	29.4%	27.4%	11.3%
대졸이하	72	130	99	95	36
	16.7%	30.1%	22.9%	22.0%	8.3%
대학원졸이상	9	7	7	7	5
	25.7%	20.0%	20.0%	20.0%	14.3%
전 체	116	215	210	199	81
	14.1%	26.2%	25.6%	24.2%	9.9%

<표 16> 경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8	21	88	142	93
	2.3%	6.0%	25.0%	40.3%	26.4%
대졸이하	19	41	126	174	71
	4.4%	9.5%	29.2%	40.4%	16.5%
대학원졸이상	6	2	8	11	8
	17.1%	5.7%	22.9%	31.4%	22.9%
전 체	33	64	222	327	172
	4.0%	7.8%	27.1%	40.0%	21.0%

&lt;표 17&gt; 경찰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12	26	80	149	89
	3.4%	7.3%	22.5%	41.9%	25.0%
대졸이하	19	38	116	192	68
	4.4%	8.8%	26.8%	44.3%	15.7%
대학원졸이상	6	2	5	15	7
	17.1%	5.7%	14.3%	42.9%	20.0%
전 체	37	66	201	356	164
	4.5%	8.0%	24.4%	43.2%	19.9%

&lt;표 18&gt; 경찰의 교육, 인사관리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31	55	120	98	51
	8.7%	15.5%	33.8%	27.6%	14.4%
대졸이상	39	76	150	123	44
	9.0%	17.6%	34.7%	28.5%	10.2%
대학원졸이상	8	4	7	9	7
	22.9%	11.4%	20.0%	25.7%	20.0%
전 체	78	135	277	230	102
	9.5%	16.4%	33.7%	28.0%	12.4%

&lt;표 19&gt; 경찰관을 위해 학위과정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41	174	119	20	1
	11.5%	49.0%	33.5%	5.6%	.3%
대졸이하	45	251	111	16	10
	10.4%	58.0%	25.6%	3.7%	2.3%
대학원졸이상	4	13	9	6	3
	11.4%	37.1%	25.7%	17.1%	8.6%
전 체	90	438	239	42	14
	10.9%	53.2%	29.0%	5.1%	1.7%

<표 20> 석사 이상의 전문가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34	171	112	32	6
	9.6%	48.2%	31.5%	9.0%	1.7%
대졸이하	41	254	108	18	12
	9.5%	58.7%	24.9%	4.2%	2.8%
대학원졸이상	4	12	11	5	3
	11.4%	34.3%	31.4%	14.3%	8.6%
전 체	79	437	231	55	21
	9.6%	53.1%	28.1%	6.7%	2.6%

<표 21> 석사 학위 소지자는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35	125	136	53	4
	9.9%	35.4%	38.5%	15.0%	1.1%
대졸이하	53	220	129	20	9
	12.3%	51.0%	29.9%	4.6%	2.1%
대학원졸이상	3	10	9	11	2
	8.6%	28.6%	25.7%	31.4%	5.7%
전 체	91	355	274	84	15
	11.1%	43.3%	33.5%	10.3%	1.8%

<표 22> 기존의 경찰 관련 대학원에서는 경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과목들이 충분히 개설되어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31	155	140	25	3
	8.8%	43.8%	39.5%	7.1%	.8%
대졸이하	40	221	144	15	10
	9.3%	51.4%	33.5%	3.5%	2.3%
대학원졸이상	5	11	9	4	6
	14.3%	31.4%	25.7%	11.4%	17.1%
전체	76	387	293	44	19
	9.3%	47.3%	35.8%	5.4%	2.3%

<표 23> 기존의 대학원은 교과과정에 있어 체계성이 부족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13	59	159	108	14
	3.7%	16.7%	45.0%	30.6%	4.0%
대졸이하	12	45	169	169	36
	2.8%	10.4%	39.2%	39.2%	8.4%
대학원졸이상	6	8	4	12	2
	18.8%	25.0%	12.5%	37.5%	6.3%
전체	31	112	332	289	52
	3.8%	13.7%	40.7%	35.4%	6.4%

<표 24> 경찰조직은 경찰대학원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37	127	141	39	5
	10.6%	36.4%	40.4%	11.2%	1.4%
대졸이상	50	192	142	31	9
	11.8%	45.3%	33.5%	7.3%	2.1%
대학원졸이상	4	15	11	1	4
	11.4%	42.9%	31.4%	2.9%	11.4%
전체	91	334	294	71	18
	11.3%	41.3%	36.4%	8.8%	2.2%

<표 25> 현재 대학원을 수학할 교육 기회 및 교육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74	164	87	24	4
	21.0%	46.5%	24.6%	6.8%	1.1%
대졸이하	112	212	84	14	8
	26.0%	49.3%	19.5%	3.3%	1.9%
대학원졸이상	4	20	4	1	4
	12.1%	60.6%	12.1%	3.0%	12.1%
전체	190	396	175	39	16
	23.3%	48.5%	21.4%	4.8%	2.0%

<표 26> 경찰 조직은 정책적으로 대학원 이수를 권장하고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51	165	109	26	1
	14.5%	46.9%	31.0%	7.4%	.3%
대졸이하	63	207	124	29	8
	14.6%	48.0%	28.8%	6.7%	1.9%
대학원졸이상	3	22	5	1	3
	8.8%	64.7%	14.7%	2.9%	8.8%
전 체	117	394	238	56	12
	14.3%	48.2%	29.1%	6.9%	1.5%

<표 27> 일반 대학의 대학원 과정은 수업료가 과다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11	44	101	148	46
	3.1%	12.6%	28.9%	42.3%	13.1%
대졸이하	10	23	96	192	108
	2.3%	5.4%	22.4%	44.8%	25.2%
대학원졸이상	1	4	7	14	8
	2.9%	11.8%	20.6%	41.2%	23.5%
전 체	22	71	204	354	162
	2.7%	8.7%	25.1%	43.5%	19.9%

<표 28> 근처에 경찰 관련 전공을 개설한 대학원이 충분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52	178	76	30	9
	15.1%	51.6%	22.0%	8.7%	2.6%
대졸이하	76	229	90	20	13
	17.8%	53.5%	21.0%	4.7%	3.0%
대학원졸이상	5	18	3	3	5
	14.7%	52.9%	8.8%	8.8%	14.7%
전 체	133	425	169	53	27
	16.5%	52.7%	20.9%	6.6%	3.3%

<표 29> 현재 일반 대학원에는 실제 경찰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개설되어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37	167	127	18	4
	10.5%	47.3%	36.0%	5.1%	1.1%
대졸이하	49	221	129	23	10
	11.3%	51.2%	29.9%	5.3%	2.3%
대학원졸이상	1	14	8	6	5
	2.9%	41.2%	23.5%	17.6%	14.7%
전 체	87	402	264	47	19
	10.6%	49.1%	32.2%	5.7%	2.3%

<표 30> 일반 대학원에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교수가 충분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50	170	101	29	4
	14.1%	48.0%	28.5%	8.2%	1.1%
대졸이하	87	199	111	21	12
	20.2%	46.3%	25.8%	4.9%	2.8%
대학원졸이상	5	17	5	4	4
	14.3%	48.6%	14.3%	11.4%	11.4%
전 체	142	386	217	54	20
	17.3%	47.1%	26.5%	6.6%	2.4%

<표 31> 현재 경찰에서는 석사학위 취득에 대하여 인센티브(학위수당, 승진 점수 등)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49	142	125	38	1
	13.8%	40.0%	35.2%	10.7%	.3%
대졸이상	78	194	139	12	7
	18.1%	45.1%	32.3%	2.8%	1.6%
대학원졸이상	5	15	6	2	4
	15.6%	46.9%	18.8%	6.3%	12.5%
전 체	132	351	270	52	12
	16.2%	43.0%	33.0%	6.4%	1.5%

<표 32> 기존 일반 대학원에서는 최신의 수사기법, 경찰행정 등에 대한 학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33	164	133	18	4
	9.4%	46.6%	37.8%	5.1%	1.1%
대졸이하	71	212	122	19	8
	16.4%	49.1%	28.2%	4.4%	1.9%
대학원졸이상	5	17	6	3	4
	14.3%	48.6%	17.1%	8.6%	11.4%
전 체	109	393	261	40	16
	13.3%	48.0%	31.9%	4.9%	2.0%

<표 33> 경찰 또는 치안 문제와 관련하여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33	142	139	30	10
	9.3%	40.1%	39.3%	8.5%	2.8%
대졸이하	51	207	136	26	13
	11.8%	47.8%	31.4%	6.0%	3.0%
대학원졸이상	2	18	5	5	5
	5.7%	51.4%	14.3%	14.3%	14.3%
전 체	86	367	280	61	28
	10.5%	44.6%	34.1%	7.4%	3.4%

<표 34> 학위 취득에 대해 인센티브(학위수당, 승진 점수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26	52	92	153	29
	7.4%	14.8%	26.1%	43.5%	8.2%
대졸이하	31	43	111	183	63
	7.2%	10.0%	25.8%	42.5%	14.6%
대학원졸이상	1	6	4	13	11
	2.9%	17.1%	11.4%	37.1%	31.4%
전 체	58	101	207	349	103
	7.1%	12.3%	25.3%	42.7%	12.6%

&lt;표 35&gt; 대학원 학비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16	29	59	183	63
	4.6%	8.3%	16.9%	52.3%	18.0%
대졸이하	15	20	63	195	139
	3.5%	4.6%	14.6%	45.1%	32.2%
대학원졸이상	1	3	5	18	8
	2.9%	8.6%	14.3%	51.4%	22.9%
전 체	32	52	127	396	210
	3.9%	6.4%	15.5%	48.5%	25.7%

&lt;표 36&gt; 대학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7	17	47	196	85
	2.0%	4.8%	13.4%	55.7%	24.1%
대졸이하	10	15	43	229	135
	2.3%	3.5%	10.0%	53.0%	31.3%
대학원졸이상		1	5	20	9
		2.9%	14.3%	57.1%	25.7%
전 체	17	33	95	445	229
	2.1%	4.0%	11.6%	54.3%	28.0%

&lt;표 37&gt; 학위취득을 위한 대학원 파견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9	30	71	163	78
	2.6%	8.5%	20.2%	46.4%	22.2%
대졸이하	9	23	81	186	133
	2.1%	5.3%	18.8%	43.1%	30.8%
대학원졸이상	1	2	5	17	8
	3.0%	6.1%	15.2%	51.5%	24.2%
전 체	19	55	157	366	219
	2.3%	6.7%	19.2%	44.9%	26.8%

<표 38> 경찰대학원에 일반인의 입학도 허용한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23	77	77	124	46
	6.6%	22.2%	22.2%	35.7%	13.3%
대졸이하	52	93	96	136	50
	12.2%	21.8%	22.5%	31.9%	11.7%
대학원졸이상	3	1	5	15	8
	9.4%	3.1%	15.6%	46.9%	25.0%
전 체	78	171	178	275	104
	9.7%	21.2%	22.1%	34.1%	12.9%

<표 39> 기존의 경찰연수과정은 최신의 수사기법이나 범죄 동향 등에 대해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19	103	173	44	14
	5.4%	29.2%	49.0%	12.5%	4.0%
대졸이하	33	173	172	38	13
	7.7%	40.3%	40.1%	8.9%	3.0%
대학원졸이상	1	13	14	4	2
	2.9%	38.2%	41.2%	11.8%	5.9%
전 체	53	289	359	86	29
	6.5%	35.4%	44.0%	10.5%	3.6%

<표 40> 입학생의 일정비율은 일정계급 이상(경감)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79	114	94	58	7
	22.4%	32.4%	26.7%	16.5%	2.0%
대졸이하	131	146	72	69	15
	30.3%	33.7%	16.6%	15.9%	3.5%
대학원졸이상	7	7	5	15	
	20.6%	20.6%	14.7%	44.1%	
전 체	217	267	171	142	22
	26.5%	32.6%	20.9%	17.3%	2.7%

<표 41> 입학생의 일정비율은 계급에 관계없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19	27	60	159	87
	5.4%	7.7%	17.0%	45.2%	24.7%
대졸이하	14	32	61	177	149
	3.2%	7.4%	14.1%	40.9%	34.4%
대학원졸이상	1	2	8	15	9
	2.9%	5.7%	22.9%	42.9%	25.7%
전 체	34	61	129	351	245
	4.1%	7.4%	15.7%	42.8%	29.9%

<표 42> 대학원생 선발은 현장 경험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고졸이하	28	61	90	130	42
	8.0%	17.4%	25.6%	37.0%	12.0%
대졸이하	43	67	85	174	64
	9.9%	15.5%	19.6%	40.2%	14.8%
대학원졸이상	4	9	7	13	2
	11.4%	25.7%	20.0%	37.1%	5.7%
전 체	75	137	182	317	108
	9.2%	16.7%	22.2%	38.7%	13.2%

<표 43> 경찰대학원을 설립한다면 어느 방법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경찰대학 내에 추가로 설립	일반대학교에 경찰대학원 설립의뢰	경찰청산하에 독립대학원 설립
고졸이하	142	55	148
	41.2%	15.9%	42.9%
대졸이하	49	88	284
	11.6%	20.9%	67.5%
대학원졸이상	16	14	5
	45.7%	40.0%	14.3%
전 체	207	157	437
	25.8%	19.6%	54.6%

<표 44> 경찰대학원을 설립한다면 교과과정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일반 대학원과 동일하게 운영(2년제, 주간 수업, 방학 있음, 논문)	1년제의 집중 과정(주간수업, 방학 없음, 매일 수업)으로 운영	전문 대학원과 동일하게 운영(2.5년제, 야간수업, 방학 있음)
고졸이하	181	53	112
	52.3%	15.3%	32.4%
대졸이하	173	67	183
	40.9%	15.8%	43.3%
대학원졸이상	16	2	14
	50.0%	6.3%	43.8%
전 체	370	122	309
	46.2%	15.2%	38.6%

<표 45> 경찰대학원 학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전액 자비로 한다.	정부에서 일부 비용(훈련비)을 보조한다.	전액 정부에서 부담(훈련비)한다.
고졸이하	32	200	115
	9.2%	57.6%	33.1%
대졸이하	20	184	222
	4.7%	43.2%	52.1%
대학원졸이상	4	23	7
	11.8%	67.6%	20.6%
전 체	56	407	344
	6.9%	50.4%	42.6%

## &lt; 부 록 4 &gt; 관계법령

## 경찰대학설치법

제정 1979. 12. 28 법률제3172호

6차개정 1994. 12. 22 법률제4798호(경찰공무원법)

7차개정 2001. 1. 29 법률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설 치)** 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 자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대학을 둔다.(개정 '91. 5. 31)

**제2조(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3조(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4조(교과)** ① 경찰대학의 교과는 경찰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90. 12. 27, '91. 5. 31)

② 일반학과정은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일반학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원배치기준 및 시설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장과 공무원)** 경찰대학에 학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6조(고등교육법의 준용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경찰청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90. 12. 27, '90. 12. 31, '91. 5. 31)

**제7조**(학사학위수여) ① (생략)

② (생략)

**제8조**(졸업생의 임명) 경찰대학의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위로 임명한다.

**제9조**(학비 및 수당지급등) ① 경찰대학 학생의 학비는 전액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경찰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피복 기타 교육에 필요한 급여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

**제10조**(의무복무)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그 의무복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학비 기타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90. 12. 3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

③ 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90. 12. 31, 개정 '94. 12. 22)

**제11조**(병역법의 준용) 경찰대학 학생의 군사교육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57조를 준용한다.(개정 '83. 12. 31, '93. 12. 31)

**제12조**(부설교육기관등) ① 경찰대학에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발전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명칭과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다만, 경찰대학 학생의 모집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 부 칙('94. 12. 22)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국방대학교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국방관리·연합 및 합동작전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방대학교는 국방부장관소속하에 둔다.

**제3조(대학원등의 설치)**

- ①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국방관리대학원·합동참모대학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 ②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대학원·대학·직무연수부 및 교수부 등의 조직·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정 및 수업연한 등)**

- ① 국방대학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기본과정(이하 "기본과정"이라 한다)과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 ② 기본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③ 기본과정 및 학위과정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입학자격)**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자는 군·정부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자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1.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2.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3. 특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 제6조(교과)

- ① 기본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집행 및 연합·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 ②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1.1.29>
- ③ 특별과정의 교과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학위수여등)** 학위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고 등록하되, 학위의 종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1.1.29>

#### 제8조(총장등의 임명)

- ① 국방대학교에 총장 1인 및 부총장 1인을 두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 각 1인을 두며, 합동참모대학에 학장 1인을 두고, 직무연수부에 직무연수부장 1인을 두며, 교수부에 교수부장 1인을 둔다.
- ② 국방대학교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교수등"이라 한다)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③ 총장은 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하고, 부총장·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보하되, 부총장·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을 교수중에서 보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 ④ 합동참모대학의 학장은 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 ⑤ 부총장·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장관급장교를 부총장·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직무연수부장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수등의 임용등)**

- ①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전임강사는 총장이 각각 임명한다.
- ②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영관급장교 또는 군무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④ 학위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되, 그 임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 1. 교수 : 8년이내
  - 2. 부교수 : 6년이내
  - 3. 조교수 : 4년이내
  - 4. 전임강사 : 2년이내
- ⑤ 교수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0조(부설기관)**

- ① 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및 도서관을 둔다.
- ② 합동참모대학에 부설기관으로 합동교리발전부를 둔다.
- ③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도서관 및 합동교리발전부의 조직·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료등의 징수)**

- ① 총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기타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6017호,1999.9.7>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國防大學院設置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軍人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8條第3項중 "國防大學院"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제4조 (재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國防大學院設置法에 의한 국방대학원(이하 "국방대학원"이라 한다)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방대학교(이하 "국방대학교"라 한다)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을 졸업한 자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또는 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국방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졸업한 자는 국방대학교 해당학위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국방대학원의 교직원은 국방대학교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방대학원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최초 소속하였던 교육기관에서의 임용일을 이 법에 의한 임용일로 본다.

## 부 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국방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9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 칙 <제7088호,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보장대학원)

- ① 국방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장대학원은 국가안전보장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학술을 교수(教授)한다.
- ② 안전보장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보한다.

**제3조** (국방관리대학원)

-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리대학원은 국방자원관리·정보자원관리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술을 교수한다.
- ② 국방관리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한다.

**제4조** (합동참모대학)

-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참모대학은 군사전략, 군사기획(軍事企劃), 연합 및 합동작전에 관한 학술을 교수한다.
- ② 합동참모대학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한다.

**제5조** (직무연수부)

-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부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학술을 교수한다.
- ② 직무연수부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총장이 보하되, 교수로 보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교수부 등)**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수부
2. 기획조정실
3. 행정지원부

② 교수부는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교수등"이라 한다)의 임용·운용 등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기획조정실 및 행정지원부는 국방대학교의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교수부·기획조정실 및 행정지원부의 사무분장·조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7조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은 석사학위 과정으로 하고, 그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9.12>

**제8조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5조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관 및 학술단체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3. 방송사·신문사 또는 통신사 등 언론기관
4. 경제·사회단체
5. 기업체

**제9조 (입학자격)**

1. 현역장교로서 각군대학을 졸업한 자
2. 4급 이상의 공무원
3. 제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

① 안전보장대학원·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현역장교로서 각군대학을 졸업한 자

2. 5급 이상의 공무원

② 합동참모대학의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중위 이상의 현역장교
- 2. 6급 이상의 공무원

3. 제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자외에 외국군 장교 기타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학시킬 수 있다

**제10조 (학생의 정원 및 선발)**

①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선발 및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총장은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의 명단을 입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총장 등)**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방대학교의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안전보장대학원 및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과 합동참모대학의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 교수부장은 교수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교수등의 인사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제12조 (교수등의 정원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

수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국방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를 제외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교수등의 자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1.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방분야의 정책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당 실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및 국방관련 정책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풍부하고, 군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관 또는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3조의2**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 ②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본조신설 2004.9.9]

**제14조**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이하 "안보문제연구소"라 한다)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총장이 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관급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보할 수 있다.
-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소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 ③ 안보문제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연구

2.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3. 국방대학교의 각 교육분야별 학술이론의 연구
  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학술회의의 개최
  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자료의 수집
  6. 출판물의 간행
  7. 교수 및 학생의 연구업무 지원·지도
- ④ 안보문제연구소에 군사연구위원회(軍事研究委員會)·정신교육순회홍보단(精神教育巡廻弘報團) 및 연구조정관과 필요한 연구실을 두되, 그 사무분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 (도서관)**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교수중에서 총장이 보한다.
-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의 업무를 통할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국방대학교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도서관에 자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도서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 (합동교리발전부)**

-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교리발전부에 부장을 두되, 부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합동참모대학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대학 학장이 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 ② 동교리발전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합 및 합동작전 교리(敎理), 전쟁모의(戰爭模擬)분야의 연구
  2. 합동참모의장이 요구하는 군사문제의 연구
  3. 군사문제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4. 군사관련 서지(書誌)의 출판 및 간행
  5. 교리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 ③ 합동교리발전부에 연구조정관과 필요한 연구실을 두되, 그 사무분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교리 발전부의 관장업무를 합동참모의장으로 하여금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 (학칙)

- ①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과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 ③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기·수업일수 및 휴학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3.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
  4. 교과에 관한 사항
  5. 다른 학교와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
  6. 학사보고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7. 학업평가·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8조 (위원회)

- ① 국방대학교에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인사위원회를 두고, 수업·전공·교과·학위수여 및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9조 (징계)

- ① 교수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교수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교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국방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국방부의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징계대상자의 소속 대학원 또는 대학의 원장 또는 학장
  4. 교수부장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인 교수가 징계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은 위원에서 제외하되, 국방대학교 부총장이 위원이 된다.

### 부 칙 <제16626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대학원설치법시행령 및 국방참모대학설치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국방참모대학 졸업생 및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국방참모대학을 졸업한 자는 이 영에 의한 합동참모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방참모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국방대학교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방참모대학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고, 동대학에서의 임용일을 국방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중 "국방대학원장"을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 교수"를 "국방대학교 교수"로, "안보과정"을 "기본과정"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대학원의 교수·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는 국방대학교 총장이 임명하고,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자는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17조제2호 본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5항"을 "국방대학교설치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안보과정담당교수"를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③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중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지급대상란,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을 각각 "국방대학교"로 한다.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⑥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서의 입교

## 부 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4>내지 <152>생략

## 부 칙 <제17355호,2001.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8536호,2004.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분야의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개발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국가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정보대학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분야에 관한 학술을 교수·연구하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국가기본정보정책 및 전략을 연구·분석·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정보대학원(이하 "정보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1999.1.21>

**제3조** (직무) 정보대학원은 다음의 직무를 관장한다.<개정 1999.1.21>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분야의 학술 교수
2.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교육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범죄수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수탁교육
5.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범죄수사 등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연구와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
6. 국가기본정보정책 및 전략의 연구·분석 및 개발
7.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수탁교육

**제4조** (학위과정 등)

- ① 정보대학원에 학위수여과정을 두되,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단기특설과정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과정의 학위종류 및 그 수여는 고등교육법 제

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9.1.21>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과정별 수업연한·학기·학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과정의 입학자격·입학방법·학위수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관계법령에 의한다

#### 제5조 (대학원장)

- ① 정보대학원에 대학원장 1인을 두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국가정보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대학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대학원장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대학원장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5장 복무(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1.21]

#### 제6조 (하부조직 및 정원)

- ① 정보대학원에 교수실, 사무처 및 연구소 등을 둔다.
- ② 제1항의 교수실, 사무처 및 연구소의 설치에 대통령은 정하고 그외의 하부조직과 정원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개정 1999.1.21>

#### 제7조 (교수의 임명 등)

- ① 정보대학원에 교수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교수등"이라 한다)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교수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교수등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 ③ 제1항의 교수등은 이를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보수 및 정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교육·복무·신분보장(정년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징계 등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직원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1999.1.21>
- ④ 명예교수의 자격 및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대학원장은 이 법이 정하는 교육목적의 직무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부 칙 <제5481호,1997.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교육법 제115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대학원장) ①정보대학원에 대학원장 1인을 두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국가정보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학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대학원장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대학원장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5장 복무(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제2항중 "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한다. 제8조중 "원장"을 "대학원장"으로 한다. ②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관 및 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관 및 학술단체
2. 정부출자 또는 출연기관
3. 기업체
4. 언론기관
5. 경제 및 사회단체

**제3조** (학과 및 전공)

- ① 국가정보대학원(이하 "정보대학원"이라 한다)에 학위수여과정으로 국가정보학과정을 두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조** (학생정원) 학위수여과정의 학위과정별·전공분야별 학생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업무와 관련한 국가정보전문가의 수요전망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입학자격)

- ① 학위수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교육 법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고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 ② 단기특설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대학원장이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9.3.31>

**제6조** (학생의 선발방법)

- ① 학위수여과정의 학생선발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고신체검사 기타 필요한 검사를 병과할 수 있다.
- ② 대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원장은 미리 인원을 정하여 국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3.31>

**제7조 (수업연한 및 학기)**

- ① 학위수여과정중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학위수여과정의 학기는 2학기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학기이상의 다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학위수여 등)**

- ① 정보대학원에서 학위수여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종별은 대학원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대학원장의 자격<개정 1999.3.31>)** 정보대학원의 대학원장은 국가정보원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9.3.31>

**제10조 (하부조직 등)**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술교수
  - 2. 학술연구 및 발표
-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에 관한 기획 및 행정지원업무
  2. 학생활동의 지도·지원 기타 학생관리
  3. 학위수여 기타 학사관리
  4. 성적·학적의 관리
- ③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기본정보정책 및 전략의 연구·분석 및 개발
  2.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연구와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학술회의 개최·학술교류 및 학술지 발간
- ④ 교수실·사무처 및 연구소의 하부조직 및 정원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9.3.31>

#### 제11조 (교수등의 자격기준)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대학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교수등"이라 한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박사학위 취득자의 임용이 곤란하거나 실무경력이 특히 필요한 전공분야의 교수등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제12조 (명예교수)** 법 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교수는 국가안전보장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담당할 교수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대학원장이 국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대할 수 있다.<개정 1999.3.31>

#### 제13조 (대학원위원회)

- ① 학위수여과정의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원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은 대학원규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교수인사위원회)

- ①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등의 임용동의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대학원에 교수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교수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 (학 칙)

- ① 학칙은 대학원장이 국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9.3.31>
- ② 학위수여과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31>

**제16조** (운영세칙) 정보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 또는 학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국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9.3.31>

**부 칙 <제15593호,1997.12.31>**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정보연수원설치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고등교육법의 적용에 대한 특례) 1998년 3월 1일(법률 제5439호 고등교육법의 시행일)전까지는 제5조제1항중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교육법 제112조 제3항"으로, 제7조제2항중 "고등교육법 제31조제3항"을 "교육법 제112조제2항"으로, 제11조제2항중 "고등교육법 제16조"를 "교육법 제79조제3항"으로 본다

## 고등교육법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

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3조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제4조 (학교의 설립등)**

-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국가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 ③ 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제5조 (지도·감독)**

- ①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1.1.29>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9.8.31, 2001.1.29>

**제6조 (학교규칙)**

-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절차, 보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교육재정)**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 ②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8조 (실험실습비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학문연구의 진흥과 교육의 연구를 조장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장구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간 상호협조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학교협의체)**

-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1조 (수업료등)

-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제2장 학생과 교직원

### 제1절 학 생

**제12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3조(학생의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2절 교직원

####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
-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교직원의 임무)**

-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 ③ 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6조** (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개정 1999.8.31>)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제17조** (겸임교원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학 교

### 제1절 통 칙

**제18조** (학교의 명칭)

-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칭을 정함에 있어 당해 학교 설립목적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 (학교의 조직)

-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필요

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및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 제20조 (학년도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② 교과목의 이수능력은 평점 및 학점제 등에 의하여,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 제22조 (수업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학점의 인정) 학교는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본조신설 1999.8.31]

**제24조** (분교)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25조** (연구시설등) 학교에는 연구소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

**제26조** (공개강좌) 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2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 제1관 대 학

**제28조** (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 (대학원)

-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③ 대학에 두는 대학원의 종류,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제31조 (수업년한)

- ①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년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년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 ② 대학원의 수업년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 각각 2년이상
  2.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 4년이상
- ③ 학칙이 정하는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32조 (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제33조 (입학자격)

-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②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③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1999.8.31, 2001.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신설 1999.8.31>

**제35조 (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과정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1999.8.31>

**제36조 (시간제 등록)**

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선발방법 및 등록인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관 산업대학**

**제37조 (목적)**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 (수업년한) 산업대학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은 각각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9조** (교과목이수의 인정) 산업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40조** (산업체 위탁교육)

- ① 산업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8.3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절 교육대학 등

**제41조** (목적)

-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2조**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년한)

- ① 교육대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
- ② 교육대학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

**제43조** (종합교원양성대학)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중 교육대학에 관한 규정은 종합교원양성대학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목표)**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  
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윤리를 갖추도록 함
2.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을 체득하게 함
3.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함

**제45조 (부설학교)**

①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1. 교육대학 : 초등학교
2. 사범대학 : 중학교 및 고등학교
3. 종합교원양성대학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부설학교로 대용할 수 있다.

③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외에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제46조 (임시교원양성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기관 및 임시교원연수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제4절 전문대학

**제47조 (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 (수업년한)**

- ① 전문대학의 수업년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년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 ②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제49조 (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0조 (학위의 수여)**

-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삭제<1999.8.31>

**제51조 (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제5절 방송·통신대학**

**제52조 (목적)** 방송·통신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 (방송·통신대학의 과정 및 수업년한)**

- ① 방송·통신대학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 ② 방송·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

**제54조 (학위의 수여)**

- ① 방송·통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② 방송·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삭제<1999.8.31>

**제6절 기술대학**

**제55조 (목적)**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 (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년한)**

- ① 기술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과정의 수업년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제57조 (입학자격등)**

- ①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 ②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 ③ 기술대학의 학생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제58조 (학위의 수여)**

- ①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②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삭제<1999.8.31>

## 제7절 각종학교

### 제59조 (각종학교)

- ① 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② 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④ 제35조제1항·제5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상급 학위과정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8.31, 2001.1.29>
- ⑤ 각종학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제4장 보칙 및 벌칙

###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

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61조 (휴업 및 휴교명령)**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해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된 학교는 휴업기간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교된 학교는 휴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제62조 (학교등의 폐쇄)**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1.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수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2001.1.29>

**제63조** (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또는 시설등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64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립인가,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3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4.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지 제3항,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부 칙 <제5439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대학원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대학원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본다. 제3조 (개방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개방대학은 이 법에 의한 산업대학으로 본다. 제4조 (방송통신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은 이 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으로 본다. 제5조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는 이 법에 의한 교육과로 본다. 제6조 (학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제정된 학칙은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개방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제8조 (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수여된 전문학사학위·학사학위·석사학위·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전문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방송통신대학의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개방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

문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6006호,1999.8.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 제46조, 제59조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제2항 및 제63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59조제5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 칙 <제6709호,2002.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보고서 2005-07

## 경찰대학원 설립방안 연구

2005년 8월 발행

2005년 8월 인쇄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연남리 88번지

인쇄처 : (주) 대한 피앤디  
(TEL : (02)2268-0458)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